

발 간 등 록 번 호

11-1380000-001036-14

인삼산업법

2008. 3.

농림수산식품부

인삼산업법

목 차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제1장 총 칙 | | |
| 제1조(목적) 2 | 제1조(목적) 2 | 제1조(목적) 2 |
| 제2조(정의) 2 | | 제2조(연구기관의 범위) 4 |
| 제3조(인삼산업진흥시책의 강구) 4 | | |
| 제2장 인삼경작 및 수확 | | |
| 제4조(경작신고) 5 | | 제3조(경작신고 등) 5 |
| 제5조 <삭제> 7 | | 제4조(인삼경작 승계의 신고) 6 |
| 제6조 <삭제> 7 | | 제5조 <삭제> 7 |
| 제7조 <삭제> 7 | | 제6조 <삭제> 7 |
| 제8조(경작방법 및 지도 등) 7 | | 제7조(사용금지 농약비료) 7 |
| 제9조(수삼의 연근확인) 8 | | 제8조(수삼의 연근확인) 8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제3장 계약경작 및 수급조절 | | |
| 제10조(계약경작 등) | 10 | 제9조(계약경작사업비의 우선지원) 11 |
| 제11조(수매비축 및 출하조절 등) | 11 | |
| 제4장 인삼류 등 제조 | | |
| 제12조(인삼류제조업 및 인삼류제품류제조의 신고 등) | 12 | 제10조(인삼류제조업의 신고 등) |
| | | 제11조(시설기준) |
| | | 제12조 <삭제> |
| | 제2조(인삼류제조업자의 중요변경 신고 사항) | 제13조(인삼류제조업의 변경·폐업 등의 신고) |
| | 14 | 14 |
| | 제3조(인삼제품류의 종류) | |
| | 14 | |
| 제13조 <삭제> | 15 | |
| 제14조(영업자의 지위승계 등) | 16 | 제14조(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 16 |
| 제15조(인삼류의 제조기준 등) | 17 | 제15조(제조기준) |
| | 제3조의2(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및 판정기 준 등) | 17 |
| | 17 | 제16조 <삭제> |
| 제16조(영업폐쇄 등) | 18 | 제17조(영업의 폐쇄명령·정지처분의 세부기준) |
| | | 19 |

| 제5장 검사 및 수출입 등 | | | | | |
|-------------------------------|----|-------------------------------|----|---------------------------|----|
| 제17조(검사) | 19 | 제4조(검사의 예외) | 19 | 제18조(검사의 신청 등) | 19 |
| 제17조의2(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 | 24 | 제5조(자체검사업체의 시설·인력 등) | 24 | 제18조의2 <삭제> | 21 |
| 제17조의3(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 등) | 25 | | | 제18조의3(검사의 기준 등) | 21 |
| 제17조의4(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 27 | | | 제18조의4(품질보증기간) | 22 |
| 제17조의5(검사원의 자격 등) | 29 | 제5조의2(검사원의 자격) | 29 | 제19조(검사의 장소) | 23 |
| 제17조의6(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 31 | | | 제20조(인삼종자·종묘의 검사) | 23 |
| 제18조(품질인증) | 32 | | | 제21조(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 | 24 |
| 제19조(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 32 | | | 제21조의2 <삭제> | 26 |
| | | | | 제22조(검사수수료) | 26 |
| | | | | 제23조(검사합격품의 확인검사) | 27 |
| | | | | 제24조(압류 등) | 28 |
| | | | | 제25조(검사결과의 표시 등) | 29 |
| | | | | 제26조(검사원 교육) | 30 |
| | | | | 제27조(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31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제20조(인삼류 시장접근물량 수입추천) 34 | | 제28조(수입부담금의 납입등) 34 |
| 제6장 인삼류의 표기등 | | |
| 제21조 <삭제> 35 | | |
| 제22조(고려인삼 등의 표시) 35 | | 제29조 <삭제> 35 |
| 제7장 <삭제> | | |
| 제23조 <삭제> 36 | | 제30조 <삭제> 35 |
| 제24조 <삭제> 36 | | |
| 제25조 <삭제> 36 | | |
| 제26조 <삭제> 36 | | |
| 제27조 <삭제> 36 | | |
| 제8장 보 칙 | | |
| 제28조(권한의 위임) 36 | | |
| 제29조(조사 등) 37 | | |
| 제30조 <삭제> 37 | | |
| 제30조의2(별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37 | | 제31조(관계직원 및 소속공무원의 증표) 37 |

| 제9장 벌 칙 | | |
|--|----|--|
| 제31조(벌칙) | 38 | |
| 제32조(양벌규정) | 40 | |
| 제33조(과태료) | 40 | |
| 부 칙(1995.12.6 제5022호) | | |
| 제1조(시행일) | 43 | |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 43 | |
|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 43 | |
| 제4조(경작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 43 | |
| 제5조(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 44 | |
| 제6조(홍삼제품의 제조·가공 및 품질 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 44 | |
|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 44 | |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 44 | |
|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46 | |
| 부 칙(1996.8.8 제5153호) | | |
| 제1조(시행일) | 46 | |
| 제2조 생략 | 46 | |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 46 | |
| 제4조 생략 | 47 | |
| 제6조(과태료의 부과) | 40 | |
| 부 칙(1996.6.29 제15087호) | | |
| 제1조(시행일) | 43 | |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 43 | |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 44 | |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46 | |
| 부 칙(1996.8.8 제15135호) | | |
| 제1조(시행일) | 46 | |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46 | |
| 제32조(과태료 징수절차) | 40 | |
| 부 칙(1996.7.1 제1238호) | | |
| 제1조(시행일) | 43 | |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 43 | |
| 제3조(경작지정 신청기간에 관한 경과 조치) | 43 | |
| 제4조(인삼제조업 등록 및 신고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 44 | |
| 제5조(인삼류의 지리적 표기등록 신청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 44 | |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 44 | |
|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46 | |
| 부 칙(1996.12.28 제1246호) | | |
| 시행일 | 48 |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부 칙(1997.12.13 제5453호) | 부 칙(1997.12.31 제15598호) | |
| 제1조(시행일) 48 | 시행일 48 | |
| 제2조 생략 48 | | |
| 부 칙(1999.1.21 제5664호) | 부 칙(1999.6.30 제16446호) | 부 칙(1999.8.7 제1337호) |
| 제1조(시행일) 48 | 제1조(시행일) 48 | 시행일 50 |
| 제2조(제조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48 | 제2조(지리적 표시등록에 관한 경과 | |
| 제3조(자체검사업체의 지정에 관한 | 조치) 48 | |
| 경과조치) 48 | | |
|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49 | | |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49 | | |
| 부 칙(1999.1.21 제5667호) | | |
| 제1조(시행일) 49 | | |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49 | | |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49 | | |
| 제8조 생략 49 | | |
| 부 칙(2000.1.21 제6189호) | | 부 칙(2000.6.23 제1366호) |
| 제1조(시행일) 50 | | 제1조(시행일) 51 |
| 제2조(인삼산업진흥기금의 폐지에 | | 제2조 생략 52 |
| 관한 경과조치) 50 | | |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51 |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52 |
| 제4조(기금폐지에 따른 다른 | | |
| 법률과의 관계) 51 | |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부 칙(2001.1.26, 제6380호) | 부 칙(2001.6.22 제17242호) | 부 칙(2001.7.14 제1392호) |
| 제1조(시행일) 52 | 제1조(시행일) 52 | 제1조(시행일) 52 |
| 제2조(인삼제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52 | 제2조(미삼등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52 | 제2조(등급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52 |
| 제3조(지리적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52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에관한 경과조치) 52 | |
| 제4조(농산물품질관리법의 제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53 | | |
|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53 | | |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53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53 | |
| 부 칙(2001.1.29 제6399호) | | |
| 제1조(시행일) 54 | | |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54 | | |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54 | | |
| 제9조 생략 54 | | |
| | 부 칙(2004.3.17 제18312호) | |
| | 시행일 54 | |
| 부 칙(2003.12.11 제6998호) | 부 칙(2004.6.25 제18439호) | 부 칙(2004.6.30 제1477호) |
| ①(시행일) 55 | ①(시행일) 55 | ①(시행일) 55 |
|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55 | ②(검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55 | ②(검사장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55 |
| | | ③(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55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부 칙(2004.12.31, 제7275호) | | 부 칙(2005.6.11, 제1496호) |
| 제1조(시행일) 55 | | ①(시행일) 56 |
| 제2조 및 제3조 생략 56 | | ②(제조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56 |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56 | | |
| 제5조 생략 56 | | 부 칙(2006.4.13, 제1522호) |
| | | 시행일 56 |
| 부 칙(2007.7.13, 제8505호) | 부 칙(2008.1.11, 제20539호) | 부 칙(2008.1.14, 제1578호) |
| ①(시행일) 56 | 시행일 56 | 제1조(시행일) 56 |
| ②(자체검사업체에 대한 경과조치) 56 | | 제2조(품질보증기간에 관한 적용례) 56 |
| ③(영업폐쇄 등에 관한 경과조치) 57 | | 제3조(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57 |
| | | 제4조(자체검사업체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 조치) 57 |
| | | 제5조(재검사명령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57 |
| | | 제6조(인삼류조사직원증 등에 관한 경과 조치) 57 |
| 부 칙(2008.2.29, 제8852호) | 부 칙(2008.2.29, 제20677호) | 부 칙(2008.3.3, 제1587호) |
| 제1조(시행일) 58 | 제1조(시행일) 58 | 제1조(시행일) 58 |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58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58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58 |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58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58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58 |
| 제7조 생략 58 | | |

| 법 른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 style="text-align: center;">인삼산업법</p> <p>제 정 1995.12. 6. 법률 제5022호 개 정 1996. 8. 8. 법률 제5153호 (정부조직법) 1997.12.13. 법률 제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다른공인회계사법 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9. 1.21. 법률 제5664호 1999. 1.21. 법률 제5667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2000. 1.21. 법률 제6189호 2001. 1.26. 법률 제6380호 2001. 1.29. 법률 제6399호 2003.12.11. 법률 제6998호 2004.12.31. 법률 제7275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2007. 7.13. 법률 제8505호 2008. 2.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p> | <p style="text-align: center;">인삼산업법 시행령</p> <p>제 정 1996. 6.29. 대통령령 제15087호 개 정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다른관세법 시행령등의개정령) 1999. 6.30. 대통령령 제16446호 2001. 6.22. 대통령령 제17242호 2004. 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 규정등중개정령) 2004. 6.25. 대통령령 제18439호 2008. 1.11. 대통령령 제20539호 2008. 2.29. 대통령령 제20677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 <p style="text-align: center;">인삼산업법 시행규칙</p> <p>제 정 1996. 7. 1. 농림수산부령 제1238호 개 정 1996.12.28. 농림부령 제1246호 (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1999. 8. 7. 농림부령 제1337호 2000. 6.23. 농림부령 제1366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2001. 7.14. 농림부령 제1392호 2004. 6.30. 농림부령 제1477호 2005. 6.11. 농림부령 제1496호 2006. 4.13. 농림부령 제1522호 2008. 1.14. 농림부령 제1578호 2008. 3. 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7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 style="text-align: center;">第1章 總則</p> <p>第1條 (目的) 이 法은 人蔘 및 人蔘類의 耕作·製造·檢査등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人蔘을 特産物로 보호·육성하고 人蔘産業의 健全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1.21, 2001.1.26, 2007.7.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人蔘"이라 함은 오가피科 人蔘屬植物을 말한다. 2. "水蔘"이라 함은 말리지 아니한 人蔘을 말한다. 3. "紅蔘"이라 함은 水蔘을 蒸氣 또는 기타 방법으로 찌서 익혀 말린 것을 말한다. 4. "太極蔘"이라 함은 水蔘을 물로 익혀서 말린 것을 말한다. 5. "白蔘"이라 함은 水蔘을 햇볕·열풍 또 | <p>제1조 (목적) 이 영은 인삼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삼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1, 2006.4.13></p>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는 기타 방법으로 익히지 아니하고 말린 것을 말한다.</p> <p>6. "人蔘類"라 함은 第2號 내지 第5號에 規定된 것 모두를 말한다.</p> <p>7. "年根"이라 함은 人蔘이 出芽하여 자란 年數를 말한다.</p> <p>7의2. "원산지"란 人蔘이 생산된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p> <p>8. "人蔘類製造"라 함은 水蔘을 原料로 하여 紅蔘, 太極蔘 또는 白蔘을 製造하는 것을 말한다.</p> <p>8의2. "人蔘製品類"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12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公典)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에 收錄된 食品중 人蔘類를 原料로 하여 製造·加工된 食品을 말한다.</p> <p>9. "생산자단체"라 함은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人蔘關聯 品目組合(이하 "組合"이라 한다) 및 農業協同組合中央會(이하 "中央會"라 한다)를 말한다.</p> | | |

| 법 른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第3條 (人蔘産業振興施策의 강구)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성향상·수출촉진·유통개선·가격안정 및 품질검사와 연구개발 등 인삼산업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p> <p>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生産者團體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研究機關으로 하여금 人蔘의 優良種苗, 경작 및 검사기술의 개발·보급, 栽培適地調査 및 인삼제품류의 개발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7.7.13></p> <p>③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 또는 사업의 施行에 필요한 事業費를 보조 또는 응자할 수 있다.</p> | | <p>제2조 (연구기관의 범위) 「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6.12.28, 1999.8.7, 2005.6.11, 2006.4.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촌진흥청소속 연구기관 2. 삭제 <2004.6.30>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식품연구원 4.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삼제품의 개발등에 관한 사업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인삼류 연구기관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 style="text-align: center;">第2章 人蔘耕作 및 收穫</p> <p>第4條 (耕作申告) ①人蔘을 耕作하고자 하는 者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耕作地를 管轄하는 組合에 申告 할 수 있다. 申告事項중 農林수산식품부령이 定하는 重要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 | <p>제3조 (경작신고 등)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의 경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인삼식재 전년도 9월 3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삼경작신고서에 경작지의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경작지를 관할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관련 품목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의 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삼경작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2005.6.11></p> <p>②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작면적 2. 식재연도 3. 경작지의 위치 <p>③법 제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인</p>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농림 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耕作地를 管轄하는 組合에 相續·讓受 또는 合併의 申告를 할 수 있다.</p> <p>1.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耕作地를 相續하거나 讓受한 者</p> <p>2.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耕作者가 法人인 경우 그 法人의 合併後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併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p> <p>③삭제 <2003.12.11></p> <p>[전문개정 1999.1.21]</p> | | <p>삼경작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삼경작변경신고서에 인삼경작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삼경작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1999.8.7]</p> <p>제4조 (인삼경작 승계의 신고) ①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지의 상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속·양수 또는 합병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삼경작승계신고서에 피승계인의 인삼경작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삼경작승계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第5條 삭제 <1999.1.21></p> <p>第6條 삭제 <1999.1.21></p> <p>第7條 삭제 <1999.1.21></p> <p>第8條 (耕作方法 및 指導等) ①農村振興廳長은 人蔘耕作者의 所得增進과 人蔘類의 品質向上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과 協議하여 標準人蔘耕作方法을 定하여 告示할 수 있다. <개정 2003.12.11></p> <p>②農村振興廳長 및 中央會長은 人蔘耕作者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耕作方法에 따라 耕作하도록 指導할 수 있다. <개정 2003.12.11></p> <p>③人蔘耕作者는 人蔘을 耕作함에 있어서는 농림수산물부령이 定하는 殘留性農藥 및 化學肥料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8.8></p> | | <p>[전문개정 1999.8.7]</p> <p>제5조 삭제 <1999.8.7></p> <p>제6조 삭제 <1999.8.7></p> <p>제7조 (사용금지농약·비료) 법 제8조제3항에서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잔류성 농약 및 화학비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6.12.28,</p>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第9條 (水蓼의 年根確認) ①人蓼耕作者가 5年根 이상의 水蓼을 收穫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組合에 年根確認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3.12.11></p> <p>②組合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있는 때에는 檢査擔當職員으로 하여금 收穫에 立會하여 水蓼의 年根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年根確認의 節次·방법·檢査擔當職員의 資格要件 등 年根確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p> | | <p>2001.7.14, 2005.6.11></p> <p>1. 「농약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p> <p>2. 질소·인산·가리성분중 1성분이상을 함유하는 무기질비료로서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작용에 의하여 생산되는 비료</p> <p>3. 삭제 <2001.7.14></p> <p>제8조 (수삼의 연근확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삼의 연근확인신청을 하려는 자는 수확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삼연근확인신청서를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4></p> <p>②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수확에 입회하도록 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삼연근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1. 수확대상 경작지의 식재연도가 연근확인신청서상의 식재연도와 일치하는지의</p> |

| 법 른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1.21]</p> | | <p>여부</p> <p>2. 수확대상 경작지에 최초 식재연도이후 연근이 다른 인삼이 이식되었는지의 여부</p> <p>3. 연근확인을 받고자 하는 수삼이 수확에 입회한 포장에서 재배된 것인지의 여부</p> <p>4. 연근확인을 받고자 하는 수삼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근판별 세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p> <p>③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담당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7.14></p> <p>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또는 조합에서 2년이상 인삼경작 지도 및 인삼제조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p> <p>2.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류 검사기관(이하 "인삼류검사기관"이라 한</p>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 style="text-align: center;">第3章 契約耕作 및 需給調節</p> <p>第10條 (契約耕作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水蓼의 需給調節 및 價格安定을 위하여 人蓼耕作者 또는 生産者團體와 人蓼製造·加工業者간의 契約耕作을 勸獎·알선 할 수 있다. <개정 1996.8.8></p> <p>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耕作의 확대등을 위하여 해당</p> | | <p>다) 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1년이상 인삼관련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중앙회 또는 조합의 직원</p> <p>④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근확인에 필요한 연근판별 세부기준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중 연근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⑤중앙회장은 연근확인을 한 수삼의 포장별 봉인 및 표시방법 기타 연근확인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1999.8.7]</p>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契約者에게 第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費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6.8.8></p> <p>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耕作의 勸獎·알선과 事業費의 우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p> <p>第11條 (收買備蓄 및 出荷調節등) 농림수산식품부장은 人蔘類의 價格安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中央會로 하여금 人蔘類를 收買하여 備蓄·放出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p> | | <p>제9조 (계약경작사업비의 우선지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계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량묘삼의 생산자금 2. 인삼식재에 필요한 자금 3. 농기계 및 경작자재의 구입자금 4. 인삼경작지의 관리에 필요한 자금 5. 가공시설자금 6. 기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第4章 人蔘類 등 製造 <개정 2001.1.26></p> <p>第12條 (人蔘類製造業 및 人蔘製品類製造의 신고 등<개정 2001.1.26>) ①人蔘類製造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製造場을 管轄하는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人蔘耕作者가 자기가 生産한 水蔘을 原料로 하여 自家製造한 紅蔘·太極蔘 또는 白蔘을 輸出 또는 都賣의 目的으로 蒐集하는 者(이하 "蒐集者"라 한다)에게 販賣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6, 2003.12.11, 2007.7.13></p> | | <p>제10조 (인삼류제조업의 신고 등 <개정 2008.1.14>)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삼류제조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삼류제조업등신고서에 시설내역서(홍삼 또는 태극삼을 제조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제조장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4></p> <p>②인삼류제조업자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제품류의 제조·가공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삼류제조업등신고서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규</p>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紅蓼 또는 太極蓼의 製造業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施設基準을 갖추어야 한다.</p> | | <p>정에 의한 수수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1></p> <p>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삼류제조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인삼류제조업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④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삼제품류의 제조·가공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인삼제품류 영업신고통보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납부받은 수수료와 함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1.7.14]</p> <p>제11조 (시설기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홍삼 또는 태극삼제조업의 시설 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전문개정 1999.8.7]</p>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이하 "人蔘類製造業者"라 한다)는 그 申告事項중 施設의 賃貸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重要사항을 변경한 때 또는 그 營業을 廢業·休業하거나 休業한 營業을 再開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日 이내에 이를 市長·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2001.1.26></p> <p>④人蔘類製造業者는 人蔘類를 製造하고 남은 副産物을 原料로 하여 人蔘製品類</p> | <p>제2조 (인삼류제조업자의 重要변경신고사항) 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重要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또는 제조장의 소재지 4. 제조하는 인삼류 <p>제3조 (인삼제품류의 종류)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서 "인삼제품류중 대통령령이 정</p> | <p>제12조 삭제 <1999.8.7></p> <p>제13조 (인삼류제조업의 변경·폐업등의 신고<개정 2001.7.14>) ①법 제12조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신고사항의 변경, 폐업, 휴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인삼류제조업신고필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p> <p>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規定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인삼류제조업신고필증을 正正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휴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p> <p>[전문개정 1999.8.7]</p>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品目を 製造·加工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食品衛生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食品의 製造·加工에 관한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1.26></p> <p>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人蔘類製造業者는 食品衛生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1.1.26></p> <p>⑥시장·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食品衛生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食品의 製造·加工에 관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6></p> <p>[全文改正 99.1.21 法5664]</p> <p>第13條 삭제 <1999.1.21></p> | <p>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축인삼류 2. 인삼분말류 3. 농축홍삼류 4. 홍삼분말류 5. 당침(唐針)인삼 6. 가용성(可溶性) 인삼성분(인삼사포닌이 그램당 80밀리그램 이상의 비율로 포함된 것을 말한다)이 80퍼센트 이상인 백삼제품 7. 가용성(可溶性) 홍삼성분(홍삼사포닌이 그램당 70밀리그램 이상의 비율로 포함된 것을 말한다)이 80퍼센트 이상인 홍삼제품 |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第14條 (營業者의 地位承繼 등) ①人蔘類製造業者가 死亡하거나 그 營業을 讓渡한 때 또는 法人인 人蔘類製造業者의 合併이 있는 때에는 그 相續人, 營業을 讓受한 者 또는 合併後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併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이 그 人蔘類製造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개정 2001.1.26></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人蔘類製造業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承繼한 날부터 20日 이내에 이를 市長·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人蔘製品類의 製造를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1.1.26></p> <p>③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人蔘製品類 製造의 승계를 함께 신고한 자는 食品衛生法 제25조제3항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승계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關係행정기</p> | | <p>제14조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人蔘류제조업자의 地位를 承繼한 자는 承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人蔘류제조업등승계신고서에 피승계인의 人蔘류제조업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제2항 후단의 規定에 의하여 人蔘제품류의 製造의 승계를 함께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規定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1></p> <p>②시장·군수는 제1항 전단의 規定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人蔘류제조업신고필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p> <p>③시장·군수는 제1항 후단의 規定에 의한 人蔘제품류의 製造의 승계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人蔘제품류제조업승계신고통보서에 동항 후단의</p>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관의 장에게 그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6> [畵文改正 1999.1.21 法5664]</p> <p>第15條 (人蔘類의 製造基準등<개정 2001.1.26>) ①인삼류를 제조하는 자는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연근별로 구분하여 제조하고 당해 제품이나 그 용기·포장 등에 해당 연근 및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산지의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13> ②人蔘類를 제조하는 자는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製造基準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1.1.26> ③농림수산물부장관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 검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인삼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p> | <p>제3조의2 (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1.11]</p> | <p>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납부받은 수수료와 함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7.14]</p> <p>제15조 (제조기준<개정 1999.8.7>)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홍삼·태극삼 및 백삼의 제조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8.7></p> <p>제16조 삭제 <1999.8.7></p>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준수에 관한 자료를 제출·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직원을 제조업소에 출입시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7.13></p> <p>④第3項의 경우 관계직원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3.12.11></p> <p>[전문개정 1999.1.21]</p> <p>第16條 (營業閉鎖등) ①市長·郡守는 人蔘類製造와 관련하여 人蔘類製造業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營業의 閉鎖를 命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營業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2007.7.13></p> <p>1.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에 미달한 때</p> <p>2.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方法을 위반하거나 연근 또는 원산지를 표시</p> | |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때</p> <p>3.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基準을 위반한 때</p> <p>4.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閉鎖命令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法人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 또는 任員을 포함한다)는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人蔘類製造業의 申告를 할 수 없다.<개정 2001.1.26></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閉鎖命令·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1999.1.21]</p> <p style="text-align: center;">第5章 檢査 및 輸出入等</p> <p>제17조 (검사)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거나 농림</p> | <p>제4조 (검사의 예외)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인삼류의 제조자</p> | <p>제17조 (영업의 폐쇄명령·정지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전문개정 1999.8.7]</p> <p>제18조 (검사의 신청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p> |

| 법 른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류검사기관(이하 "인삼류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가제조(自家製造)를 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 또는 수출의 목적으로 제조한 자 2.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가제조한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수출 또는 도매의 목적으로 수집한 수집자 3.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한 자 <p>②인삼류검사기관과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는 그 검사실적을 검사기록서에 기록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보증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p> | <p>또는 수집자가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에 그 원산지·중량·제조자 및 판매자를 실명으로 표기하여 인삼제품류의 제조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6.25, 2008.1.11></p> | <p>10일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삼류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검사시료를 첨부하여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2004.6.30, 2008.1.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삼연근확인서(5년근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2.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사본(수출의 경우에 한한다) 3. 수입면장사본(수입의 경우에 한한다) <p>② 인삼류검사기관과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이하 "자체검사업체"라 한다)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할 검사기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1.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사관리대장 : 별지 제13호의2서식 2. 검사필증수불대장 : 별지 제13호의3서식 3. 원산지검사대장 : 별지 제13호의4서식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 | <p>4. 농약잔류검사대장 : 별지 제13호의5서식 5. 미생물검사대장 : 별지 제13호의6서식 [전문개정 1999.8.7]</p> <p>제18조의2 삭제 <2001.7.14></p> <p>제18조의3 (검사의 기준등) 법 제17조제3항 에 따른 인삼류의 연근검사·품질검사·포 장검사 및 표시검사등의 기준·방법은 별 표 3의2와 같다. 다만, 수출입 홍삼·태극 삼 또는 백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4.6.30, 2008.1.14></p> <p>1. 수출의 경우 : 수출상대국 또는 수출 상대방의 요청(수입면장 등)에 의하여 검 사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자 체검사업체가 별표 3의2의 검사중 원산 지 및 연근검사외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p> <p>2. 수입의 경우 : 수입 인삼류의 체형 및</p>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③제1항에 따른 검사는 연근검사·품질검사·포장검사 및 표시검사 등으로 구분하여 하되, 그 검사의 기준·방법 및 품질보증기간, 그 밖에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p> <p>④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포장 등에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인삼류의 경우에는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p> | | <p>특성등에 비추어 별표 3의2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이 농림수산물부령의 승인을 얻어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1999.8.7]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3는 제21조로 이동 <2008.1.14>]</p> <p>제18조의4 (품질보증기간 <개정 2008.1.14>)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품질보증기간은 검사일부터 기산하되, 그 기간은 제조일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자체검사업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4.6.30, 2008.1.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공포장하지 아니한 홍삼·태극삼은 2년 이내, 진공포장한 홍삼·태극삼은 10년 이내 2. 진공포장하지 아니한 백삼은 2년 이내, 진공포장한 백삼은 3년 이내 <p>[전문개정 1999.8.7]</p>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⑤인삼류검사기관과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는 검사수량과 검사성적서 등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⑥인삼의 종자 또는 종묘를 생산하거나 수집하는 자는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으로부터 그 품질에 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p> | | <p>[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4는 제20조로 이동 <2008.1.14>]</p> <p>제19조 (검사의 장소)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6.30, 2008.1.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홍삼중 홍삼본삼·원형홍삼, 태극삼중 태극본삼 및 수출입 인삼류 : 제조장 또는 영업소 2. 제1호에 따른 인삼류 외의 인삼류 :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장소 <p>[전문개정 1999.8.7]</p> <p>[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8조의3로 이동 <2008.1.14>]</p> <p>제20조 (인삼종자·종묘의 검사) ①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으로부터 인삼의 종자 또는 종묘를 검사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사</p>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⑦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7.7.13]</p> | | <p>신청서를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30, 2008.1.14></p> <p>②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의 기준 및 방법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1999.8.7]</p> <p>[제1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18조의4로 이동 <2008.1.14>]</p> |
| <p>제17조의2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 ①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및 자가제조하여 검사를 받은 실적과 제조관리기준서 등을 갖추어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 등 인삼의 종류별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아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은 자(이하 "자체검사업체"라 한다)는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신이 직접 제조한</p> | <p>제5조 (자체검사업체의 시설·인력 등)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개정 2008.1.11></p> | <p>제21조 (자체검사업체의 지정등)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받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자체검사업체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2008.1.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삼류제조업신고필증사본 2. 인삼류 품질관리시설 및 인력내역 3. 최근 2년동안 인삼의 종류별로 자가제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에 한하여 자체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출용인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제조하지 아니한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에 대하여도 자가상표를 붙이고 자체검사를 할 수 있다.</p> <p>③ 자체검사업체는 지정받은 시설이나 인력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절차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07.7.13] [종전의 제17조의2는 제17조의5로 이동 <2007.7.13>]</p> <p>제17조의3 (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 등) ①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자체검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검사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명할</p> | | <p>조하여 인삼류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실적 1부</p> <p>②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업체지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삼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업체의 시설·인력등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2006.4.13></p> <p>③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자체검사업체지정취소의 통지 및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1.7.14, 2008.1.14></p>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명하여야 한다.</p> <p>1.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의 기준에 미달하는 인삼류를 합격품으로 검사한 경우</p> <p>2. 제17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쇄하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판매한 경우</p> <p>3.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직접 제조하지 아니한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한 경우. 다만, 수출용으로서 자가상표를 붙여 자체검사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p> <p>4. 이 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p> <p>5. 이 조에 따른 검사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검사정지기간 중에 검사를 한 경우</p> <p>②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자</p> | | <p>④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자체검사업체가 제18조의3에 따른 검사의 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14></p> <p>1. 품목별, 연근별 제조실적 및 자체검사성적</p> <p>2. 수삼연근확인서(5년근이상의 경우에 한한다)</p> <p>3. 농약잔류검사, 이화학성분검사 및 미생물검사의 성적</p> <p>[본조신설 1999.8.7]</p> <p>[제1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19조로 이동 <2008.1.14>]</p> <p>제21조의2 삭제 <2004.6.30></p> <p>제22조 (검사수수료)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별표 4의2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4.6.30, 2008.1.14></p> <p>[전문개정 1999.8.7]</p>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을 수 없다.</p> <p>③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에 대한 시정명령·검사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세부적인 기준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07.7.13]</p> <p>[종전의 제17조의3은 제17조의6으로 이동 <2007.7.13>]</p> <p>제17조의4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p> <p>①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인삼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 결과 당해 제품이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제품과 검사일</p> | | <p>[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5조로 이동 <2008.1.14>]</p> <p>제23조 (검사합격품의 확인검사) ①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중이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중인 검사합격품을 수거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6.30, 2008.1.14></p> <p>②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의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6.30, 2008.1.14></p> <p>1. 수거·폐기 :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때</p>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이 같은 제품의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제품을 압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p> <p>③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하려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07.7.13]</p> | | <p>2. 재검사 : 농약잔류허용기준외의 검사기준에 미달한 경우로서 연근검사착오율 등이 별표 5에 따른 기준을 초과한 때</p> <p>③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 시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확인검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업체로 하여금 확인검사에 입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4></p> <p>④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를 명한 때에는 당해 제품을 검사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자체검사업체에 시정조치 등을 명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6.30, 2008.1.14></p> <p>[전문개정 1999.8.7]</p> <p>[제26조에서 이동 <2008.1.14>]</p> <p>제24조 (압류 등) ①국립농산물검사기관 소속공무원은 법 제17조의4제2항 및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제품을 압류한 때에는</p> |

| 법 른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제17조의5 (검사원의 자격 등) ①인삼류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업체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검사원으로 하여금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은 인삼의 품질관리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p> <p>③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인삼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7.13></p> | <p>제5조의2 (검사원의 자격)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제17조의5제3항에 따른 검사원 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08.1.11></p> <p>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생물학·화학·농학·식품공학·영양학 또는 약학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p> <p>2. 국·공립연구기관, 인삼류검사기관, 인삼류제조업체 또는 인삼제품류제조업체의 이화학검사 또는 식품미생물검사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p> | <p>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압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4></p> <p>②압류한 물품의 처분절차·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04.6.30] [제26조의2에서 이동 <2008.1.14>]</p> <p>제25조 (검사결과의 표시등) ①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합격품에 대하여는 검사증지 또는 자체검사필증을 붙이거나 인쇄하고 검사일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한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의 검사에 합격한 것에 대하여는 검사증지 대신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포장에 봉인을 하고 검사일부인을 날인할 수 있다. <개정 2004.6.30, 2008.1.14></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지, 자체검사필증 및 검사일부인의 규격, 부착방법</p>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④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시간과 소요 경비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7.13> [본조신설 2003.12.11] [제17조의2에서 이동 <2007.7.13>]</p> | <p>3.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인삼류제조업체·인삼류생산자단체 또는 인삼류연구기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을 말한다)의 품질검사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인삼류검사기관의 품질검사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본조신설 2004.6.25]</p> | <p>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자체검사필증 및 검사일부인의 경우에는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4.6.30> ③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를 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사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검사수량 및 검사성적서는 매 반기의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4> [전문개정 1999.8.7] [제22조에서 이동 <2008.1.14>]</p> <p>제26조 (검사원 교육) ① 법 제17조의5제4항에 따른 검사원 교육내용은 인삼류 검사기법·안전성확보 및 품질관리 등으로 하고, 교육시간은 연간 6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의5제4항에 따라 교육대상</p>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第17條의6 (檢査結果에 대한 異議申請 등)</p> <p>① 제17조제1항 및 제6항의 規定에 의하여 人蔘類檢査機關 또는 人蔘種子·種苗檢査機關의 檢査를 받은 者가 檢査結果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때에는 檢査를 한 檢査機關의 長에게 異議를 申請하고 再檢査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3.12.11, 2007.7.13></p> <p>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 및 再檢査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本條新設 1999.1.21]</p> | | <p>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정한다.</p> <p>[본조신설 2008.1.14]</p> <p>[종전 제26조는 제23조로 이동 <2008.1.14>]</p> <p>제26조의2 [종전 제26조의2는 제24조로 이동 <2008.1.14>]</p> <p>제27조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17조의6에 따라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검사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검사를 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6.30, 2008.1.14></p> <p>②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p> |

| 법 른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제17조의3에서 이동 <2007.7.13>]</p> <p>第18條 (品質認證) 水蓼을 生産하여 品質認證을 받고자 하는 者는 農産物品質管理法에 의하여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品質認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1.21, 2001.1.29></p> <p>第19條 (未檢査品の 去來制限等) ①紅蓼·太極蓼 또는 白蓼을 販賣하는 者는 第1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年根表示를 제거 또는 변경하여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보관 또는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②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檢査에 불합격된 紅蓼·</p> | | <p>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8.7] [제2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2조로 이동 <2008.1.14>]</p> <p>제27조의2 [종전 제27조의2는 제27조로 이동 2008.1.14>]</p>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太極蔘 또는 白蔘은 이를 販賣 또는 輸出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보관 또는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수출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중인 것을 적발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제품을 압류하게 하거나 제1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제품의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03.12.11></p> <p>④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하는 자는 제1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한 검사품의 포장을 뜯어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거나 그 내용물이나 포장 단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7.13></p> <p>⑤제17조의4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절차 등에 관</p> | |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12.11, 2007.7.13> [전문개정 1999.1.21]</p> <p>第20條 (人蔘類 市場接近物量 輸入推薦<개정 1999.1.21>) ①삭제 <1999.1.21> ②世界貿易機構(WTO)設立을위한마라케쉬協定에 따른 大韓民國 讓許表상의 市場接近物量에 해당하는 人蔘類를 讓許稅率로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6.8.8>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人蔘類를 輸入하는 者는 輸入價格과 販賣價格의 差額의 범위안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 기금에 納入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0.1.21, 2004.12.31></p> | | <p>제28조 (수입부담금의 납입등<개정 1999.8.7>) ①삭제 <1999.8.7> ②삭제 <1999.8.7> ③법 제20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수입한 인삼류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산정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해당 인삼류의 물품대금·운임·보험료 기타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보관료·운송료 및 판매수수료등 국내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6.12.28> ④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아 인삼류를 수입한 자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농수산물유통 및</p>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 style="text-align: center;">第6章 人蔘類의 表記등</p> <p>第21條 삭제 <1999.1.21></p> <p>제22조 (고려인삼 등의 표시) 인삼류와 그 용기·포장 등에 "고려인삼"·"고려수삼"·"고려홍삼"·"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고려(高麗)"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1.1.26]</p> | | <p>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28, 2000.6.23, 2001.7.14, 2005.6.11></p> <p>제29조 삭제 <2001.7.14></p> <p>제30조 삭제 <2000.6.23></p> |

| 법 른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 style="text-align: center;">第7章 삭제 <2000.1.21></p> <p>第23條 삭제 <2000.1.21></p> <p>第24條 삭제 <2000.1.21></p> <p>第25條 삭제 <2000.1.21></p> <p>第26條 삭제 <2000.1.21></p> <p>第27條 삭제 <2000.1.21></p> <p style="text-align: center;">第8章 補則</p> <p>第28條 (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농림수 산식품부장관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農村振興廳長,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 市長·郡 守, 所屬機關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21]</p> | |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第29條 (調査 등<개정 1999.1.21>)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市長·郡守 또는 國立農産物檢査機關의 長은 인삼류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등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生産者團體·人蔘製造業者·蒐集者·輸出入業者·販賣業者 또는 品質認證을 받은 者등에 대하여 施設·帳簿·書類 기타의 物件을 調査 또는 閱覽하게 하거나 檢査에 필요한 試料를 收去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21, 2007.7.13></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閱覽 또는 收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1999.1.21></p> <p>第30條 삭제 <2001.1.26></p> <p>第30條의2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p> | | <p>제31조 (관계직원 및 소속공무원의 증표) 법 제15조제4항·제17조의4제3항·제19조제5항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직원 및 소속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1.14></p> <p>[전문개정 2004.6.30]</p>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制)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年根確認業務에 증사하는 組合의 任·職員과 제17조제1항·제6항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業務에 증사하는 人蔘類檢査機關 및 人蔘種子·種苗檢査機關의 任·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개정 2003.12.11, 2007.7.13></p> <p>[본조신설 1999.1.21]</p> <p style="text-align: center;">第9章 罰則</p> <p>第31條 (罰則)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3.12.11, 2007.7.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年根을 허위로 표시하여 販賣한 製造者 2.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年根表示를 제거 또는 변경하여 紅蔘·太極蔘 또는 白蔘을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 | |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로 보관 또는 陳列한 者</p> <p>3.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검 사품 또는 불합격품을 판매·수출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p> <p>4.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한 검사 품의 포장을 뜯어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거나 그 내용물이나 포장단 위를 변경한 자</p>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 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1.26, 2003.12.11, 2007.7.13></p> <p>1.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 지 아니하고 紅蓼이나 5年根 이상의 太 極蓼 또는 白蓼을 製造·販賣한 者</p> <p>2.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基準 을 위반하여 紅蓼·太極蓼 또는 白蓼을 製造한 者</p> <p>3. 第1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관계직원 의 製造確認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p> | |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해 또는 기피한 者</p> <p>4. 제1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압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5.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압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전문개정 1999.1.21]</p> <p>第32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1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p> <p>第33條 (過怠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元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1999.1.21, 2001.1.26, 2003.12.11, 2007.7.13></p> <p>1. 第8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殘留性</p> | <p>제6조 (과태료의 부과) ①농림수산물부장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 또는 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한다)·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p> | <p>제32조 (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p>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農藥 또는 化學肥料를 사용한 者</p> <p>2.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4年根 이하의 太極蔘 또는 白蔘을 製造·販賣한 者</p> <p>3.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施設 變更·休廢業등에 관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人蔘類製造業者</p> <p>4. 人蔘類製造業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로서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紅蔘·太極蔘 또는 白蔘을 製造·販賣한 者</p> <p>4의2.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록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인삼류검사기관과 자체 검사업체</p> <p>5. 제17조제4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自體 檢査畢證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印刷하지 아니하고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販賣한 者</p> <p>6. 제17조제5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自體 檢査成績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者</p> <p>7.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p> | <p>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 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p> <p>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p> <p>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p> | <p><개정 2001.7.14, 2004.6.30, 2005.6.11></p>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지 아니한 자</p> <p>8. 제17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한 자체검사업체</p> <p>9.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등에 대하여 正當한 理由없이 거부한 者</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 令이 正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물 부장관·國立農産物檢査機關의 長 또는 市長·郡守(이하 "賦課權者"라 한다)가 賦課·徵收한다. <개정 1996.8.8, 1999.1.21></p> <p>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p> <p>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p> | |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 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p> <p>附則 <제5022호,1995.12.6></p> <p>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p> <p>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人蔘事業法은 이 를 廢止한다.</p> <p>第3條 (基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人蔘 振興基金은 이 法에 의하여 設置된 人蔘 産業振興基金으로 본다.</p> <p>第4條 (耕作指定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人蔘事業法에 의하여 韓國담배人蔘公社가 指定한 紅蔘耕作團에 대하여는 韓國담배人蔘公社와 生産者 團體간에 耕作契約한 것으로 보며, 韓國 담배人蔘公社社長이 收買하여야 한다.</p> <p>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人蔘事業法에</p> | <p>부칙 <제15087호 1996.6.29></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인삼사업법시행령 은 이를 폐지한다.</p> | <p>부칙 <제1238호,1996.7.1></p> <p>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다음 법령의 폐지) 인삼사업법시행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p> <p>제3조 (경작지정신청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경작지정을 받지 아니 하고 경작중에 있는 5년근이상의 인삼경 작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인삼경작지정신청서에 경작지를 관할하는 인삼협동조합 장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경작지</p>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의하여 韓國담배人蔘公社가 耕作指定하여 耕作중에 있는 白蔘圃 및 苗蔘圃는 이 法에 의하여 耕作指定 또는 耕作申告한 것으로 본다.</p> <p>第5條 (檢査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人蔘事業法에 의하여 행한 檢査 기타 처분은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檢査 기타 처분으로 본다.</p> <p>第6條 (紅蔘製品의 製造·加工 및 品質管理 등에 관한 經過措置) 종전의 人蔘事業法에 의한 紅蔘製品의 製造·加工許可, 기준 및 規格의 적용 기타 品質管理에 관한 사항은 食品衛生法에 의한다.</p> <p>第7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人蔘事業法에 의한다.</p> <p>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p> <p>第12條第1項중 "金融機關 및 林業協同組合中央會"를 "金融機關, 林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로 한다.</p> |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인삼협동조합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항·제2항,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3항, 제11조 및 제15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s</p> | <p>를 관할하는 지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조 (인삼제조업등록 및 신고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인삼류의 제조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90일이내에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제5조 (인삼류의 지리적표기등록신청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삼류의 지리적 표기를 실시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90일이내에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산물검사규격심의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중 "50인이내"를 "60인이내"로 한다.</p> <p>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6. 제6분과위원회 : 인삼류</p>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第13條중 “金融機關 또는 林業協同組合中央會”를 “金融機關, 林業協同組合中央會 또는 人蔘協同組合中央會”로 한다.</p> <p>第14條중 “金融機關·林業協同組合中央會”를 “金融機關·林業協同組合中央會·人蔘協同組合中央會”로 한다.</p> <p>②人蔘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p> <p>第8條第1項 내지 第3項, 第9條第1項·第2項, 第10條第1項, 第11條第2項, 第27條第1項第4號·第2項, 第29條, 第33條第3項, 第38條第1項第11號, 第39條第1項·第2項 및 第42條중 “財務部長官”을 각각 “農林水産部長官”으로 한다.</p> | <p>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한다.</p> <p>②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다음에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를 삽입한다.</p> <p>제25조중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농림축수협등“이라 한다)”를 “수산업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농림축수삼협등“이라 한다)”로 한다.</p> <p>제26조제1항중 “농림축수협등”을 “농림축수삼협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농림축수협중앙회”를 “농림축수삼협중앙회”로 한다.</p> <p>③농산물검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삼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인삼류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원의 경우에는 인삼류검사기관에서 3년이상 검사</p> | |

| 법 른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第9條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당 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人蔘事業法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같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附則(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p> <p>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 이내에 第41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海洋水産 部와 海洋警察廳의 組織에 관한 大統領 令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p> <p>第2條 省略</p> <p>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37>省 略</p> | <p>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립 농산물검사소장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반자격을 부여한다.</p> <p>별표의 농산물의 종류별 증목의 제3호중 “땅콩”을 “땅콩·인삼류”로 한다.</p> <p>제4조(다른 법령과의 關係)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인삼사업법시행령 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같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제15135호 1996.8.8)</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p> <p>제2조 내지 제8조 생략</p> | <p>제7조 (다음 법령과의 關係) 이 規勅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인삼사업법 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規 勅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 는 종전의 規定에 같음하여 이 規勅 또 는 이 規勅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38>人蔘産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p> <p>第3條第1項·第2項, 第4條, 第5條第1項·第2項 本文, 第7條第1項 本文, 第10條第1項·第2項, 第11條, 第12條第1項·第3項, 第14條第3項, 第16條第1項 本文·第2項, 第17條第1項·第3項, 第18條, 第20條第1項·第2項, 第25條第2項, 第26條, 第27條第1項·第2項 本文, 第28條, 第29條第1項, 第30條 및 第33條第2項중 “農林水産部長官”을 각각 “農林部長官”으로 한다.</p> <p>第3條第2項, 第4條第1項·第2項, 第5條第1項·第2項 本文, 第6條第2號, 第7條第1項 本文, 第8條第3項, 第9條第1項·第3項, 第10條第3項, 第12條第1項·第2項, 第14條第3項·第4項 本文, 第15條第2項·第3項, 第16條第3項, 第17條第1項 내지 第4項·第6項·第8項 및 第20條第1項·第3項중 “農林水産部令”을 각각 “農林部令”으로 한다.</p> <p><39>내지 <69>省略</p> <p>第4條 省略</p> | |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 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 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p> <p>附則 <제5664호,1999.1.21> ①(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 行한다. ②(製造業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 行당시 종전의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人蔘製造業의 登錄 또는 申告를 한 者는 第12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人蔘製造業 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③(自體檢査業體의 지정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7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體檢査業體로 決定되어</p> | <p>부칙('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9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리적 표시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 표시등록을 한 자는 제9조의 개 정규정에 의하여 인삼류검사기관장 또는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등록한 것 으로 본다.</p> | <p>부칙(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 1246호,199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통보를 받은 者는 第17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自體檢査業體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p> <p>④(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p> <p>⑤(다른 法律의 改正) 基金管理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p> <p>別表 第10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02. 人蔘産業法</p> <p>附則(農水産物品質管理法) <제5667호,1999.1.21></p> <p>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p> <p>第2條 내지 第6條 생략</p> <p>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생략</p> <p>③人蔘産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p> <p>第18條중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에 관한法律"을 "農水産物品質管理法"으로 한다.</p> <p>第8條 생략</p> | |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189호,2000.1.21></p> <p>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6月 1日부터 施行한다.</p> <p>第2條 (人蔘産業振興基金의 폐지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人蔘産業法에 의하여 설치된 人蔘産業振興基金의 債權·債務등 일체의 權利·義務 및 財産은 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 관한法律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 이 이를 承繼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이 人蔘産業振興基金으로부터 承繼하는 融資金은 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 관한法律 第60條의 規定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金利 및 기간으로 同法 第5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人蔘協同組合中央會에 融資된 것으로 본다.</p> | |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37호,1999.8.7> 이 規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③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人蔘産業振興基金의 2000年度 基金運用計劃에 반영된 事業은 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 관한法律 第57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2000年 12月 31日까지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에서 融資 또는 貸出할 수 있다.</p> <p>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基金管理基本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p> <p>別表2중 第102號를 削除한다.</p> <p>第4條 (基金廢止에 따른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人蔘産業振興基金을 인용한 경우에는 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 관한法律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 | <p>부칙(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 1366호,2000.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380호,2001.1.26></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인삼제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인삼제조업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삼류제조업자로 본다.</p> <p>제3조 (지리적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를 등록하여 사용중인 자</p> |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242호,2001.6.22></p> <p>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미삼 등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령이 정한 인삼류에 대한 검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③(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p> |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p> <p>③인삼산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8조제4항중 "인삼산업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p> <p>제30조를 삭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92호,2001.7.14></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등급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태극삼중 직삼, 곡삼, 반곡삼 및 기타 형태의 삼과 백삼중 본삼류 및 원형백삼에 대한 등급표시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6월 30일까지는 1등·2등·등외 또는 1등(송)·2등(죽)·등외(매)로 표시하여야 한다.</p>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는 이 법 시행후 5년까지는 농산물품질 관리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p> <p>제4조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제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2조, 부칙 제3조 및 제6조중 농산물품질관리법은 법률 제6399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일 전일까지는 각각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본다.</p> <p>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다만, 地理的特産品중 人蔘産業法에 의한 인삼류의 경우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표시방법 외에 인삼류와 그 용기·포장 등에 "고려인삼"."고려수삼"."고려홍삼"."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p> | <p>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④(다른 법령의 개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 1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②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류에 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국내에서 경작되는 인삼종자(Panax ginseng C.A. Meyer)를 국내에서 경작하여 생산된 수삼 또는 그 수삼을 원료로 하여 국내에서 제조된 품</p> |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고려(高麗)"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p> <p>부칙 <제6399호,2001.1.29></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7조 생략</p> <p>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인삼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8조중 "農水産物品質管理法"을 "農産物品質管理法"으로 한다.</p> <p>제9조 생략</p> | <p>목으로 한다.</p> <p>제1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다만, 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류의 경우에는 국내로 한다.</p> <p>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부칙 <제6998호,2003.12.11></p> <p>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부칙(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275호,2004.12.31></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p> | <p>부칙 <제18439호,2004.6.25></p> <p>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검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업체의 검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p> | <p>부칙 <제1477호,2004.6.30></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검사장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신청을 하였거나 자체검사업체지정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제21조,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14호 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처리기간에 관한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③(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人蔘産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중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8505호,2007.7.13></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자체검사업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p> | <p>부칙 <제20539호,2008.1.11> 이 영은 2008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p> | <p>부칙 <제1496호,2005.6.11></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p> <p>②(제조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검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1522호,2006.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578호,2008.1.14></p> <p>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4일 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품질보증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p>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다시 지정받아야 한다.</p> <p>③(영업폐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영업폐쇄 등의 명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 | <p>조의4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검사하는 백삼부터 적용한다.</p> <p>제3조 (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검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제4조 (자체검사업체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5조 (재검사명령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검사합격품의 확인검사에 대한 재검사명령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6조 (인삼류조사직원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급한 인삼류조사직원증 및 인삼류조사공무원증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

| 법 른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부칙 <제8852호,2008.2.29></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5조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p> <p>① 내지 ㉮ 생략</p> <p>㉮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항,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6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p>제3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8조, 제20조제2항, 제28조, 제29조제1</p> | <p>부칙 <제20677호,2008.2.29></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6조 생략</p> <p>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p> <p>① 내지 ㉘ 생략</p> <p>㉘ 인삼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p> <p>㉙ 내지 ㉙ 생략</p> | <p>부칙 <제1587호, 2008.3.3.></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p> <p>① 내지 ㉙ 생략</p> <p>㉙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4호, 제8조제3항제2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제6호, 제18조의3제2호, 제21조제2항, 제23조제4항 및 제28조제3항·4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p>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각</p> |

| 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
| <p>항 및 제33조제2항 중 “農林部長官”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p>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 제3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 본문 · 제2항, 제14조제2항 전단,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의6제2항 및 제20조제3항 중 “農林部令”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p> <p>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제2항 · 제3항 · 제4항 본문 ·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7조의2제4항, 제17조의3제3항, 제17조의4제2항 전단 · 후단 및 제17조의5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p> <p>㉓ 내지 ㉖ 생략</p> <p>제7조 생략</p> | | <p>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p> <p>별지 제13호서식 구비서류란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p>㉓ 내지 ㉖ 생략</p> |

인삼산업법 시행령 별표

- 별표 1. 자체검사업체의 시설·인력 등의 기준 59
-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63

자재검사업체의 시설·인력 등의 기준 (제5조관련)

1. 시설

가. 제조장의 시설은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제조장은 인삼류 제조시에는 인삼류 제조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삼제품류 및 약사법에 의한 인삼제품 의약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원료와 완제품은 분리 보관되어야 하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의 경우 그 보관장소는 각각 분리 되어 있어야 한다.

나. 검사장은 66㎡ 이상의 전용검사장이 설치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의 검사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1) 이화학적 검사기구
 - (가) 화학천칭(최소측정단위가 0.1mmg 이하인 것에 한한다)
 - (나) 건조기(최고온도 조절범위가 200±3℃인 것에 한한다)
 - (다)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 (라) 가스크로마토그래프
 - (마) 비색계(Spectrophotometer방식의 것에 한한다)
 - (바) 저온냉동고(최저온도 조절범위가 -20℃ 이하인 것에 한한다)
 - (사) 무기원소분석기(HPIC기종·ICP기종·AA기종의 것에 한한다)
 - (아) 회전감압농축기
 - (자) 조분쇄기
 - (차) 수분측정기(전기저항식, 전열건조식 또는 적외선 조사식의 것에 한한다.)

(2) 생물학적 검사기구

(가) 배양기

(나) 고압살균기(최고압력범위가 15파운드 이상인 것에 한한다)

(다) 현미경(최고 확대배율이 600 이상인 것에 한한다)

(라) 세균계수기

다. 나뭇의 (1)에 규정한 검사기구중 다음의 것에 대하여는 제3자의 검사 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검사기구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지정 또는 인정된 검사기관과 문서로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품질에 관한 최종책임은 제조업자에게 있다.

(1) 화학천칭(최소측정 단위가 0.1mmg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3) 가스크로마토그래피

(4) 비색계(Spectrophotometer방식의 것에 한한다)

(5) 무기원소분석기(HPIC기종 · ICP기종 · AA기종의 것에 한한다)

(6) 회전감압농축기

2. 조직 및 인력

가. 제조업자는 제조장에 서로 독립된 제조관리부서와 검사관리부서를 두고, 각각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나. 원료와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조관리부서 또는 검사관리부서에 제5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1인 이상과 제5조의2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1인 이상을 검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3. 검사실적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인삼의 종류별로 자가제조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검사기관으로부터 인삼류를 검사를 받은 실적이 홍삼이나 백삼은 본삼류 2톤 이상을 포함하여 연간 3톤이상, 태극삼은 연간 본삼류 2톤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인삼의 종류별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조관리 및 기타

가. 인삼류의 제조관리 및 검사관리업무를 적정히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할 기준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제조관리기준서
- (2) 검사관리기준서

나. 제조관리기준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조과정관리에 관한 사항
- (2) 시설 및 기구관리에 관한 사항
- (3) 원료관리에 관한 사항
- (4) 반제품, 완제품, 검사품 등을 연근별로 구분한 제품관리 및 보관관리 등에 관한 사항
- (5) 품명·제형 및 성상에 관한 사항
- (6) 작업중 주의할 사항
- (7)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다. 검사관리기준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원료 및 제품의 시험기록(시험항목·시험성적·판정결과·시험자·시험일)

(2) 검체의 채취량·채취장소 및 채취방법

(3) 시험결과를 관련부서에 통지하는 방법

라. 소비자의 불만 처리는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인삼류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신고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보상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2] <개정 2008.1.11>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제3항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2배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그 부과후 제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 위 반 행 위 | 근거 조문 | 과태료금액 | | |
|--|---------------|-------|-------|-------|
| | | 1회 | 2회 | 3회 이상 |
| 가.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잔류성농약 또는 화학비료를 사용한 자 | 법 제33조 제1항제1호 | 1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4년근 이하의 태극삼 또는 백삼을 제조·판매한 자 | 법 제33조 제1항제2호 | 3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 다.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면경·휴폐업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인삼류제조업자 | 법 제33조 제1항제3호 | 2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 | | | |
|---|-----------------|-------|-------|-------|
| 다. 인삼류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아니하고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제조·판매한 자 | 법 제33조 제1항제4호 | 2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마.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록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인삼류검사기관과 자체검사업체 | 법 제33조 제1항제4호의2 | 1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바.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필증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쇄하지 아니하고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한 자 | 법 제33조 제1항제5호 | 2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사.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3조 제1항제6호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아.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아니한 자 | 법 제33조 제1항제7호 | 1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자. 제17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한 자체검사업체 | 법 제33조 제1항제8호 | 1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차.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등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자 | 법 제33조 제1항제9호 | 2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 별표 1. 홍삼 또는 태극삼제조업의 시설기준 66
- 별표 2. 인삼류의 제조기준 67
- 별표 3. 영업의 폐쇄명령·정지처분의 세부기준 77
- 별표 3의2. 검사의 기준·방법 79
- 별표 4. 자체검사업체 행정처분기준 93
- 별표 4의2. 검사수수료 95
- 별표 5. 재검사명령기준 95

[별표 1] <개정 1999.8.7>

홍삼 또는 태극삼제조업의 시설기준(제11조관련)

1. 일반기준

제조·보관시설, 작업장, 급수시설, 화장실 등의 구조·위치 등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9 제1호가목 내지 마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2. 개별기준

| 구 분 | 세 부 시 설 항 목 | | |
|------------------|---|---|---|
| | 공 통 | 홍 삼 | 태 극 삼 |
| 가. 건 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실 세척실 관리실 등 ○ 저온창고 또는 일반창고 ○ 건조실 ○ 검사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삼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탕실 |
| 나. 제조에 필요한 기계·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삼장치 ○ 건조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삼기 ○ 가습·압착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탕처리기 |
| 다. 품질관리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량기 ○ 수분측정기 ○ 중량편급선별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체조직검사장치(홍삼내공·내백판별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없음 |

인삼류의 제조기준(제15조관련)

1. 용어의 정의

인삼류의 제조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머리”라 함은 뿌리인삼의 뇌두(腦頭) 또는 노두(蘆頭)를 말한다.
- 나. “몸통”이라 함은 인삼뿌리의 동체(胴體) 또는 주근(主根)을 말한다.
- 다. “다리”라 함은 몸통에 붙은 지근(支根)을 한다.
- 라. “세미(細尾)”라 함은 본삼을 제외한 잔뿌리를 말한다.
- 마. “본삼(本蔘)”이라 함은 머리, 몸통 및 다리부분으로 세미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 바. “미삼(尾蔘)”이라 함은 머리와 몸통에서 분리된 다리부분과 세미를 말한다.
- 사. “균열(龜裂)”이라 함은 인삼이 갈라진 상태를 말한다.
- 아. “내공(內空)”이라 함은 몸통 또는 다리 내부에 공간이 생긴 것을 말한다.
- 자. “내백(內白)”이라 함은 홍삼 · 태극삼의 몸통 또는 다리내부에 갈색화되지 아니한 회백색의 부분이 생긴 것을 말한다.
- 차. “적변삼(赤變蔘)”이라 함은 인삼의 표피가 붉게 변한 삼을 말한다.
- 카. “입도(粒度)”라 함은 입자의 크기를 말한다.
- 타. “백피(白皮)”라 함은 홍삼이나 태극삼으로 제조하였을 때 갈색화되지 아니한 회백색의 표피를 말한다.
- 파. “면삼(眠蔘)”이라 함은 휴면(休眠)한 삼을 말한다.
- 하. “박피(剝皮)”라 함은 껍질을 벗기는 것을 말한다.
- 거. “피해삼(被害蔘)”이라 함은 병해삼 · 썩은 삼 · 주름삼 · 균열삼 및 기계적 손상삼중에서 그 피해정도가 삼표면의 1/3 미만인 것을 말한다.

너. “등외품”이라 함은 피해삼중 그 피해정도가 1/3 이상 2/3 미만인 것을 말한다.

더. “쇄삼(碎蔘)”이라 함은 절편삼 또는 절삼에서 탈락된 삼중 6밀리미터의 체로 쳐서 체위에 남는 것을 말한다.

러. “절삼(屑蔘)”이라 함은 절편삼 또는 절삼에 탈락된 삼중 6밀리미터인 체로 쳐서 통과하는 것을 말한다.

며. “이형삼(異形蔘)”이란 홍삼, 태극삼 또는 백삼내에서 직삼, 곡삼, 반곡삼 등 두가지 이상 등급이 혼합되어 있는 인삼을 말한다.

버. “은피삼(隱皮蔘)”이라 함은 재배중에 생리장해로 인하여 표피가 거칠게 변하여 내용조각이 치밀하지 못하고 흑갈색의 테가 생기거나 속이 빈삼을 말한다.

2. 인삼류의 제조기준

가. 일반수칙

- (1) 인삼류의 제조·가공업자는 원료, 제품 및 제조공정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2) 인삼류의 제조·가공업자는 제조·가공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결과 타인과 인삼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제조·가공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 (3) 인삼류의 제조·가공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특히 제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살균·멸균작업과정 등에 종사하는 자는 위생모와 위생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 (4) 손과 신발을 씻고 소독할 수 있는 위생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5) 위생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살균, 멸균작업 또는 밀봉확인검사 등에 대한 작업기록을 작성하여 최소한 당해 품목의 유통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6) 제조·가공업소 밖으로 출하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제조기준 기타 인삼 산업 관련법령에 적합한지를 재점검하여야 한다.

(7) 원료 등의 구비요건

(가) 원료인삼은 품질과 선도가 양호하고, 부패·변질되었거나 유독 유해 물질 등에 오염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나) 인삼류의 제조·가공원료는 흙, 모래, 티끌 등과 같은 이물을 충분히 제거하고 먹는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하며, 제품목적에 필요하지 아니한 먹을 수 없는 부분은 충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인삼류의 용기·포장은 용기·포장류제조업의 신고를 한 업소에서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라) 기구 및 용기·포장류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제조기준

(1) 일반 공통기준

(가) 원료삼·중간제품 및 완제품은 연근이 다른 인삼류가 서로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근별로 구분한 후 표시하여 보관하고, 수불 관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건조작업시 제품에 직접 열을 가하는 방법으로 건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인삼류의 제조·가공 및 조리에 사용되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라) 인삼류의 제조·가공·보존 및 유통중에는 인체에 유무해와 관계없이 합성보존료, 표백제, 인공색소, 증량제, 물엿, 당류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품특성상 사용하여야 하는 때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마) 상온에서 장기보존이 어려운 인삼류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냉장, 냉동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여야 한다.

(바) 인삼제조·가공중 열처리, 냉각 또는 냉동공정은 제품의 영양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인삼류별 제조공정 및 규격

(가) 홍삼

- 1) 홍삼은 홍삼본삼, 원형홍삼, 홍미삼류 및 기타 홍삼류로 분류하여 제조한다.
- 가) 홍삼본삼은 머리와 몸통 및 다리부분이 같이 붙어 있는 상태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 나) 원형홍삼은 머리·몸통·다리 및 다리의 잔뿌리까지 수삼원형 그대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 다) 홍미삼류는 제조된 홍삼으로부터 분리한 다리 또는 잔뿌리로 제조된 것을 말하며, 크기에 따라 대미, 중미 및 세미로 구분한다.
- 라) 기타 홍삼류는 절삼홍삼, 절편홍삼 및 분쇄홍삼을 말한다.

2) 품목별 제조기준

가) 홍삼본삼

- ① 원료수삼을 선별·세척하여 고르게 익힐 수 있도록 크기별로 구분한다.
- ② 증삼장치에서 수증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찌서 익힌다.
- ③ 삼체의 수분함량이 15.0% 이하가 되도록 건조한다.
- ④ 별표 3의2의 인삼류의 검사기준(이하 “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가공·선별한다.
- ⑤ 계량하여 포장한다.

나) 원형홍삼

- ① 원료수삼을 가)의 ① 내지 ③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되, 머리·몸통·다리 및 다리의 잔뿌리까지 수삼원형을 유지하도록 제조한다.
- ②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가공·선별한다.
- ③ 계량하여 포장한다.

다) 홍미삼류

①원료미삼은 가)의 ①, ②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고, 제조된 홍삼으로부터 분리한 다리부분 및 잔뿌리 등은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가공·선별한다.

②계량하여 포장한다.

라) 기타 홍삼류

①절삼홍삼은 홍삼본삼을 가로로 2등분하여 절단한다.

②절편홍삼은 홍삼본삼을 가로·세로 또는 경사방향으로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다.

③분쇄홍삼은 홍삼본삼 및 홍미삼을 파쇄기 등으로 파쇄한 것을 말하며, 파쇄한 크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④계량하여 포장한다.

| 구 분 | 규 격 기 준 |
|---------|--|
| 중 절 홍 삼 | ○ 2mesh(11100 μ m)의 체를 통과한 후 10mesh(1900 μ 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 |
| 세 절 홍 삼 | ○ 10mesh(1900 μ m)의 체를 통과한 후 20mesh(864 μ 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 |
| 파 쇄 홍 삼 | ○ 20mesh(864 μ m)의 체를 통과한 후 120mesh(117 μ 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 |

(나) 태극삼

1) 태극삼은 태극본삼, 원형태극삼, 태극미삼류 및 기타 태극삼류로 분류하여 제조한다.

가) 태극본삼은 머리, 몸통 및 다리부분이 같이 붙어 있는 상태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나) 원형태극삼은 머리·몸통·다리 및 다리의 잔뿌리까지 수삼원형 그대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다) 태극미삼류는 제조된 태극삼으로부터 분리한 다리 또는 잔뿌리로 제조된 것을 말하며, 크기에 따라 대미, 중미 및 세미로 구분한다.

라) 기타 태극삼류는 절삼태극삼, 절편태극삼 및 분쇄태극삼을 말한다.

2) 품목별 제조기준

가) 태극본삼

① 원료수삼을 선별·세척하여 고르게 익힐 수 있도록 크기별로 구분한다.

② 열수처리장치에서 물로 익힌다.

③ 삼체의 수분함량이 15.0% 이하가 되도록 건조한다.

④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가공·선별한다.

⑤ 계량하여 포장한다.

나) 원형태극삼

① 원료수삼을 가)의 ①내지 ③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되, 머리·몸통·다리 및 다리의 잔뿌리까지 유지하도록 제조한다.

②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가공·선별한다.

③ 계량하여 포장한다.

다) 태극미삼류

① 원료미삼은 가)의 ①, ②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고, 제조된 태극삼으로부터 분리한 다리부분 및 잔뿌리 등은 검사 기준에 적합하도록 가공·선별한다.

② 계량하여 포장한다.

라) 기타 태극삼류

- ① 절삼태극삼을 태극본삼을 가로로 2등분하여 절단한다.
- ② 절편태극삼은 태극본삼을 가로·세로 또는 경사방향으로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다.
- ③ 분쇄태극삼은 태극본삼 및 태극미삼을 파쇄기 등으로 파쇄한 것을 말하며 파쇄한 크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④ 계량하여 포장한다.

| 구 분 | 규 격 기 준 |
|-----------|--|
| 중 절 태 극 삼 | ○ 2mesh(11100 μ m)의 체를 통과한 후 10mesh(1900 μ 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 |
| 세 절 태 극 삼 | ○ 10mesh(1900 μ m)의 체를 통과한 후 20mesh(864 μ 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 |
| 파 쇄 태 극 삼 | ○ 20mesh(864 μ m)의 체를 통과한 후 120mesh(117 μ 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 |

(다) 백삼

- 1) 백삼은 백삼본삼, 백미삼류, 잡삼류 및 기타 백삼류로 분류하여 제조한다.
- 가) 백삼본삼은 머리, 몸통 및 다리부분이 같이 붙어 있는 상태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 나) 백미삼류는 제조된 백삼으로부터 분리된 다리 또는 잔뿌리로 제조된 것을 말하여, 크기에 따라 대미(피대미), 중미(피중미) 및 세미로 구분된다.
- 다) 잡삼류는 생건삼, 춘미삼 및 피삼을 말한다.
- 라) 기타 백삼류는 절삼백삼, 절편백삼, 분쇄백삼 및 원형백삼을 말한다.

2) 품목별 제조기준

가) 백삼본삼

- ① 직삼은 직립형태의 것중 표피가 제거된 것을 말한다.
- ② 곡삼은 다리부분과 몸통의 일부까지 구부려 등글게 말아 감은 것중 표피가 제거된 것을 말한다.
- ③ 반곡삼은 다리부분을 구부려 반곡형태로 말아 감은 것 중 표피가 제거된 것을 말한다.
- ④ 피부직삼은 직립형태의 것중 표피가 제거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 ⑤ 피부곡삼은 다리부분은 물론 몸통의 일부까지도 구부려 등글게 말아감은 것중 표피가 제거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 ⑥ 피부반곡삼은 다리부분을 구부려 반곡형태로 말아감은 것중 표피가 제거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 ⑦ 기타 세부적인 제조방법은 아래와 같다.
- ⑧ 원료수삼을 선별·세척한다. 세척시는 60분 이상 물에 침지시켜서는 아니된다.
- ⑨ 몸통에서 다리외의 결뿌리 및 잔뿌리를 제거한다.
- ⑩ 직삼, 곡삼 및 반곡삼의 경우 표피를 제거한다.
- ⑪ 곡삼, 반곡삼, 피부곡삼 및 피부반곡삼의 경우는 삼체의 수분함량이 50% 이하가 되도록 건조한 다음 고유한 형태로 구부린다.
- ⑫ 삼체의 수분함량이 15.0% 이하가 되도록 건조한다.
- ⑬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가공·선별한다.
- ⑭ 계량하여 포장한다.

나) 백미삼류

- ① 백미삼은 제조된 백삼으로부터 분리한 다리 또는 잔뿌리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 ② 포피를 제거한 것은 크기에 따라 백대미와 백중미로 구분한다.
- ③ 포피가 제거되지 아니한 것은 크기에 따라 피대미, 피중미 및 세미로 구분한다.

다) 잡삼류

- ① 생견삼은 포피·머리의 형태가 피부본삼과 유사하나 몸통의 직경이 10mm 미만이며 개체당 무게가 6g 미만인 것을 말한다.
- ② 춘미삼은 묘삼을 건조한 것을 말한다.
- ③ 피삼은 인삼의 원형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병충해 등의 피해정도가 삼체표면의 2/3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기타 백삼류

- ① 절삼백삼은 백삼본삼을 가로로 2등분하여 절단한다.
- ② 절편백삼은 수분함량이 50%이하인 백삼본삼을 가로·세로 또는 경사방향으로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것을 말한다.
- ③ 분쇄백삼은 백삼본삼 및 백미삼을 파쇄기 등으로 파쇄한 것을 말하며, 파쇄한 크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구분 | 규격기준 |
|------|--|
| 중절백삼 | ○ 2mesh(11100 μ m)의 체를 통과한 후 10mesh(1900 μ 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 |
| 세절백삼 | ○ 10mesh(1900 μ m)의 체를 통과한 후 20mesh(864 μ 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 |
| 파쇄백삼 | ○ 20mesh(864 μ m)의 체를 통과한 후 120mesh(117 μ 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 |

④ 원형백삼은 머리·몸통·다리 및 잔뿌리가 수삼상태 그대로의 형태가 유지되도록 건조한 것을 말하며, 세부적인 제조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원료수삼을 선별·세척한다. 세척시는 60분 이상 물에 침지시켜서는 아니된다.

나 50℃ 이하의 온도에서 일정시간 건조한 다음 고유한 형태로 만든다.

다 삼체의 수분함량이 15.0% 이하가 되도록 건조한다.

라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가공·선별한다.

마 계량하여 포장한다.

영업의 폐쇄명령 ·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17조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산정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 반 행 위 | 근거법령 | 위반회수별 처분기준 | | |
|---|---------------|------------|---------|-----------------|
| | | 1회 | 2회 | 3회 |
| 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 법 제16조 제1항제1호 | 경 고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또는 영업폐쇄 |
|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조방법을 위반하거나 연근 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때 | 법 제16조 제1항제2호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또는 영업폐쇄 |

| 위 반 행 위 | 근거법령 | 위반회수별 처분기준 | | |
|---|-------------------|------------|------------|--------------------|
| | | 1회 | 2회 | 3회 |
| 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정기준을 위반한 때 | 법 제16조 제1항-제3호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또는 영업폐쇄 |
| 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 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 법 제16조 제1항-제4호 | 영업폐쇄 | | |

검사의 기준·방법(제18조의3 관련)

1. 용어의 정의

인삼류의 검사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 2 제1호(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2. 인삼류의 검사기준

가. 일반검사기준

- 1) 수분 : 15.0% 이하일 것
- 2) 비소(아비산(As_2O_3)) : 1.5mg/kg 이하(그 인삼에 원래부터 함유되어 있는 비소의 양을 제외한다)일 것
- 3) 중금속 : 10mg/kg 이하(그 인삼에 원래부터 함유되어 있는 중금속의 양을 제외한다)일 것
- 4) 회분 : 5% 이하(미삼류의 경우에는 6.0% 이하)일 것
- 5) 농약잔류허용기준 :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에 의할 것
- 6) 이물 : 인삼류는 원료의 처리과정에서 세척 등으로 제거가 가능한 이물과 제조과정에서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을 함유하지 아니할 것
- 7) 보존료, 인공색소 및 표백제가 검출되지 아니할 것
- 8) 세균수 : 50,000/g 이하이어야 하며, 진공 포장한 제품은 3,000/g 이하일 것
- 9) 대장균군이 음성일 것
- 10) 내용량이 표시량 이상일 것

11) 인삼성분

가) n-부탄올추출물(조사포닌)의 함량(%)

| | | |
|--------|-----------------|--------|
| 본삼류 | 대미 · 중미류 및 분쇄인삼 | 세미류 |
| 2.0 이상 | 3.0 이상 | 5.0 이상 |

나) 묶은 에탄올추출물의 함량 : 18.0% 이상

나. 개별검사기준

1) 연근검사

가) 검사항목

| 삼종 | 검사항목 |
|----------|-----------------------------|
| 홍삼 · 태극삼 | 4년근, 5년근 및 6년근 판별 |
| 백삼 | 2년근, 3년근, 4년근, 5년근 및 6년근 판별 |

나) 연근기준

연근검사의 기준은 머리 · 몸통 및 표피의 형태, 다리부분의 발달정도, 절단시 나이에 등을 육안 또는 발색시켜 다음 기준을 참작하여 판별한다. 다만, 연근이 다른 인삼이 혼입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연근 분류를 요청하되, 신청인이 혼입된 채로 검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낮은 연근으로 판별한다.

| 항목 연근 | 머리의 형태 | 동체 · 표피의 형태 | 다리부분의 발달정도 |
|----------|---|----------------------------------|------------------|
| 4년근 | 머리가 짧고 가늘며 2개 이상의 명확한 (莖)혼적이 있음 | 몸통의 길이의 1/2에 현저히 미달하고 표피가 얇음 | 다리가 몸통보다 현저하게 짧음 |
| 5년근 | 머리가 4년근에 비하여 굵고 길며 3개 이상의 명확한 줄기(莖)혼적이 있음 | 몸통의 길이의 1/2에 가깝고 표피가 약간 두꺼움 | 다리와 몸통이 균형을 이룸 |
| 6년근 | 머리가 5년근에 비하여 굵고 길며 4개 이상의 명확한 줄기(莖)혼적이 있음 | 몸통의 길이의 1/2에 가깝거나 그 이상이며 표피가 두꺼움 | 다리와 몸통이 균형을 이룸 |

2) 품질검사

가) 홍삼

(1) 직삼

| 항목 | 등급 | | |
|--------|--|---|---|
| | 1등(천) | 2등(지) | 3등(양) |
| 머리 | 몸통굽기와 비슷하며 건설한 것 | | |
| ① 체형 | 몸통 균열과 흠집이 없는 것 | 길이 3.5cm 이상 | |
| | | 균열과 흠집이 전체 표면적의 4분의 1 이하 | 제한없음 |
| 다리 | 1개 이상 잘 발달되어 있고 균열이 다리길이의 1/3 이하이며, 길이가 몸통길이의 3/4 이하인 것 | 1개 이상 잘 발달되어 있고 균열이 다리길이의 1/2 이하이며, 길이가 몸통길이의 3/4 이하인 것 | 다리가 없거나 불균형인 것 |
| ②수분(%) | 15.0 이하 | | |
| ③조직 | 내부조직이 치밀·견고 하되, 머리밀 10mm 이하 부분을 사선으로 절단시 내공·내백의 직경이 0.5mm 이하인 것으로 길이가 10mm 이하인 것 | 내부조직이 치밀·견고 하되, 놌두밀 10mm 이하 부분을 사선으로 절단시 내공·내백의 직경이 2.0mm 이하의 몸통길이의 1/4 이하인 것 | 내백이 몸통길이의 1/3 이하이거나, 내공 이 몸통길이의 1/2 이하인 것 |
| | 담적갈색·담황갈색·담적갈색·담황갈색·다갈색 또는 농다갈색을 띠는 것으로 균일하지 못한 것 | | |
| ④색택 | 담적갈색·담황갈색·다갈색 또는 농다갈색을 띠는 것으로 균일하지 못한 것 | | |
| ⑤표피 | 윤기있는 선택으로 황피·백피가 전체표면적의 1/4 이하인 것 | 윤기있는 선택으로 황피·백피가 전체표면적의 1/3 이하인 것 | 황피·백피 또는 옹피 등이 전체표면적의 1/2 이하인 것 |
| | ⑥ 기타 직립형태를 이루어야 하며 부착미삼은 중미이상이어야 한다. | | |

(2) 원형홍삼

직삼의 기준에 준하되, 머리·몸통·다리 및 다리의 잔뿌리까지 수삼 원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곡삼·반곡삼·기타 형태의 삼

직삼의 기준에 준하되, 체형·색택 및 표피에 대한 세부기준은 필요한 경우 국립농산물검시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4) 홍미삼류(대미, 중미, 세미)

| 등급 | 대 미 | | | 중 미 | | | 세 미 | | |
|--------------|-------------|---------------|---------|--------|---------------|---------|-------------|---------|---------|
| | 1등 | 2등 | 3등 | 1등 | 2등 | 3등 | 1등 | 2등 | 3등 |
| ① 직경 (mm) | 6 이상 | | | 4 ~ 6 | | | 4 미만 | | |
| ② 길이 (mm) | 30 이상 60 미만 | | | | | | | | |
| ③ 균열 상태 | 없는 것 | 약간 있는 것 | 제한 없음 | 없는 것 | 약간 있는 것 | 제한 없음 | 약간 균열이 있는 것 | | 제한 없음 |
| ④ 내공·내백 | 없는 것 | 단면의 1/5 이하인 것 | 제한 없음 | 없는 것 | 단면의 1/5 이하인 것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
| ⑤ 수분(%) | 15.0 이하 | | | | | | | | |
| ⑥ 이형삼의 혼률(%) | 5.0 미만 | 10.0 미만 | 50.0 미만 | 5.0 미만 | 10.0 미만 | 50.0 미만 | 5.0 미만 | 10.0 미만 | 50.0 미만 |
| ⑦ 피해삼(%) | 10미만 | 30미만 | 제한 없음 | 10미만 | 30미만 | 제한 없음 | 10미만 | 30미만 | 제한 없음 |

(5) 기타 홍삼류(절삼홍삼, 절편홍삼, 중절홍삼, 세절홍삼, 파쇄홍삼)

| 구분 | 절삼홍삼 | 절편홍삼 | 중절홍삼 | 세절홍삼 | 파쇄홍삼 |
|-------------|---|--|--|-----------------------------------|----------------------------------|
| 항목 | 과두, 동체 다리, 내공 · 내백의 선택, 포피조직이 천, 지, 양삼에 미달되는 것으로 내백이 동체의 1/2 이하여야 하며 중간부분을 기문로 자른 것 | 내용 · 내백의 가장 긴 지름이 3mm 이내이고 균열과 불량품이 없으며 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 | 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 | 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 | 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 |
| ①외관 및 성상 | | 타원형 또는 원형이며 평활한 것 | | | |
| ②절단면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 ③입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mesh(1110 0 μ m)의 체를 통과한 후 10mesh(190 0 μ m)체 위에 90% 이상 | 10mesh(190 20 μ m)의 체위 90% 이상 | 20mesh(864 7 μ m)의 체위 90% 이상 |
| ④절단 두께 (mm) | 해당없음 | 5mm 이하 | 해당없음 | | |
| ⑤수분 (%) | 15.0 이하 | | | | |

※ 비고 : 검사판정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한다.

나) 태극삼

(1) 직삼

| 구분 | | 1 등(송) | 2 등(죽) | 3 등(매) |
|-----------------|-----------|--|---|----------------------------------|
| 항목 | 머리 및 몸통 | 머리 및 몸체가 건설하고 균형을 이루며, 그 정도가 1등 최저 표준품 이상일 것 | 머리 및 몸체가 건설하고 균형을 이루며, 그 정도가 2등 최저 표준품 이상일 것 | 머리 및 몸통이 건설하고 균형정도가 등의 표준품 이상일 것 |
| | ① 외관 및 성장 | 다리가 없거나, 있는 경우 균열이 다리 길이의 1/3 이하이며 길이가 몸통길이의 3/4 이하인 것 | 다리가 없거나, 있는 경우 균열이 다리길이의 1/2 이하이며 길이가 몸통길이의 3/4 이하인 것 | 다리가 없거나 불균형인 것 |
| ② 수분(%) | | 15.0 이하 | | |
| ③ 피해삼 혼입율(%) | | 5 이하 | 10 이하 | |
| ④ 색택 | | 담황색·백황색 또는 담갈색 | 담황색·백황색 또는 담갈색 | 제한없음 |
| ⑤ 표피 | | 황피·백피가 전체 면적의 1/4 이하일 것 | 황피·백피가 전체 면적의 1/3 이하일 것 | |
| ⑥ 머리 탈락삼 혼입율(%) | | 없을 것 | 10 이하 | |
| ⑦ 기타 | | 내용조직이 충실하여 고유의 향취를 가진 것 | | |

(2) 원형태극삼

직삼의 기준에 준하되, 머리·몸통·다리 및 다리의 잔뿌리까지 수삼 원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곡삼·반곡삼·기타 형태의 삼

직삼의 기준에 준하되, 체형·색택 및 표피에 대한 세부기준은 필요한 경우 국립농산물검사가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4) 태극미삼류

| 등급 | 대 미 | | | 중 미 | | | 세 미 | | |
|----------|-------------|---------|------|-----------|---------|-------|------|---------|-------|
| | 1등 | 2등 | 3등 | 1등 | 2등 | 3등 | 1등 | 2등 | 3등 |
| ① 직경(mm) | 6 이상 | | | 4 이상 6 미만 | | | 4 미만 | | |
| ② 길이(mm) | 30 이상 60 미만 | | | | | | | | |
| ③ 균열 상태 | 없는 것 | 약간 있는 것 | 제 없음 | 없는 것 | 약간 있는 것 | 제한 없음 | 없는 것 | 약간 있는 것 | 제한 없음 |
| ④ 수분(%) | 15.0 이하 | | | | | | | | |

5) 기타 태극삼류(절삼태극삼, 절편태극삼, 중절태극삼, 세절태극삼, 파쇄태극삼)

| 구분 | 절삼태극삼 | 절편태극삼 | 중절태극삼 | 세절태극삼 | 파쇄태극삼 |
|-------------|--------------------------------------|----------------------|---|--|---|
| 항목 | 절삼태극삼 | 절편태극삼 | 중절태극삼 | 세절태극삼 | 파쇄태극삼 |
| ① 외상 및 색상 | 1, 2등에 미달 되는 것으로 삼의 중간 부분을 기점으로 자른 것 | 고유의 색상과 방향취를 갖지 않은 것 | 고유의 색상과 방향취를 가진 것 | 고유의 색상과 방향취를 가진 것 | 고유의 색상과 방향취를 가진 것 |
| ② 절단면 | 해당없음 | 타원형 또는 원형이며 평활한 것 | 해당없음 | | |
| ③ 입도 | 해당없음 | 해당 없음 | 2mesh(111100 μ m)의 체를 통과한 후 10mesh(1900 μ m)체 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 | 10mesh(1900 μ m)의 체를 통과한 후 20mesh(864 μ 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 | 20mesh(864 μ m)의 체를 통과한 후 120mesh(1117 μ m)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 |
| ④ 절단 두께(mm) | 해당없음 | 5 이하 | 해당없음 | | |
| ⑤ 수분(%) | 15.0 이하 | | | | |

다) 백삼

(1) 본삼류(직삼, 곡삼, 반곡삼, 피부직삼, 피부곡삼, 피부반곡삼)

| 항목 | 구분 | | 3 등(매) |
|-------------------|--|--|--|
| | 1 등(송) | 2 등(죽) | |
| ①외관 및 성상 | 머리 및 몸체 | 머리 및 몸체가 건설 하고 균형을 이루며, 그 정도가 1등 최저 표준품 이상일 것 | 머리 및 몸체가 건설하고 균형 정도가 등의 표준품 이상일 것 |
| | 다리 | 직삼 이상의 경우에는 1 내지 3개의 다리가 있어야 하고 그 길이가 몸통길이의 2/5 이상 일 것 | |
| ②수분(%) | 15.0 이하 | | |
| ③피해삼 혼입율(%) | 5 이하 | 10 이하 | 제한없음 |
| ④머리 탈락삼 혼입율(%) | 없을 것 | 10 이내 | 제한없음 |
| ⑤색택 | 유백색, 난백색 또는 담황색으로 광택이 있어야 한다. | | 제한없음 |
| ⑥기타 | ○ 직삼의 경우 부척미삼은 2mm 이상이어야 한다. ○ 피부백삼이 아닌 경우에는 탈피가 되어 있어야 한다. ○ 내용조직이 충실하여야 한다. ○ 은피삼은 제외한다. | | 제한없음 |

※비고 : 높은 온도로 급속건조하여 내용조직의 색택이 변한 때에는 3등으로
하고, 건조작업의 부실로 동체 절단부에 연륜이 아닌 테가 선명하게
있는 것은 2등 이하로 한다.

(2) 백미삼류((피)대미, (피)중미, 세미)

| 항목 | 등급 | | |
|-----------|---|-----|-----|
| | (피) 대 미 | 2 등 | 3 등 |
| ① 직경(mm) | 6 이상 | | |
| ② 길이(mm) | 20 이상 | | |
| ③ 균열상태 | 없는 것 | | |
| ④ 피해삼 (%) | 약간 있는 것 10 이하 30 이하 | | |
| ⑤ 선택 | ○대미 : 유백색·난백색 또는 담황색 ○피대미 : 담황색 또는 담갈색 | | |
| ⑥ 기타 | ○대미는 탈피가 되어 있어야 하고, 피대미는 표피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내용조적이 충실하여야 한다. | | |
| ⑦ 수분(%) | 15.0 이하 | | |

| 항목 | 등급 | | |
|-----------|---|-----|-----|
| | (피) 중 미 | 2 등 | 3 등 |
| ① 직경(mm) | 4~6 | | |
| ② 길이(mm) | 20 이상 | | |
| ③ 균열상태 | 약간 있는 것 | | |
| ④ 피해삼 (%) | 없는 것 10 이하 30 이하 | | |
| ⑤ 선택 | ○중미 : 유백색·난백색 또는 담황색 ○피중미 : 담황색 또는 담갈색 | | |
| ⑥ 기타 | ○중미는 탈피가 되어 있어야 하고, 피중미는 표피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내용조적이 충실하여야 한다. | | |
| ⑦ 수분(%) | 15.0 이하 | | |

4) 잡삼류

| 등급 | 1등 | 2등 | 3등 |
|---------|-----------------|------------|------|
| ①성상 | 인삼 고유 향취를 가질 것 | | |
| ②피해삼(%) | 10 이하 | 30 이하 | 제한없음 |
| ③색택 | 담황색 또는 담갈색 | 담황색 또는 담갈색 | |
| ④기타 | 내용조직이 충실하여야 한다. | | |
| ⑤수분(%) | 15.0 이하 | | |

5) 원형백삼

| 등급 | 1등(송) | 2등(죽) | 3등(매) |
|---------|--|--|--|
| ①성상 | 머리·몸체 및 다리의 잔뿌리까지 수삼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균형을 이루며, 그 정도가 1등 최저 표준품 이상일 것 | 머리·몸체 및 다리의 잔뿌리까지 수삼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균형을 이루며, 그 정도가 2등 최저 표준품 이상일 것 | 머리·몸체 및 다리의 잔뿌리까지 수삼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균형을 이루며, 그 정도가 동외 최저 표준품 이상일 것 |
| ②수분(%) | 15.0 이하 | | |
| ③피해삼(%) | 5 이하 | 10 이하 | 제한없음 |
| ④색택 | 담황색 또는 담갈색 | 담황색 · 담갈색 또는 백황색 | 담황색 · 담갈색 또는 백황색 |

※비고 : 높은 온도로 급속건조하여 내용조직의 색택이 변한 때에는 3등으로 하고, 건조작업의 부실로 동체 절단부에 연륜이 아닌 테가 선명하게 있는 것은 2등 이하로 한다.

라) 최저표준품

최저 표준품이란 삼종별로 최저한도 품질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인삼류검사기관이 제작하여 비치하는 것을 말한다.

3) 포장검사

가) 일반기준

- (1) 포장은 제품의 보관·운반과정에서 흡습 및 충격 등으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2) 포장은 제품의 품질관리에 결함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 (3) 단위포장은 이를 해체한 후 임의로 재포장할 수 없도록 봉합되어 있어야 한다.
- (4) 포장용기의 내용물 충전도가 70% 이상이어야 한다.
- (5) 홍삼본삼·태극본삼 및 백삼본삼의 경우(수입 인삼류중 인삼제품 및 인삼제제 의약품의 원료용을 제외한다) 각각 다음의 지별 또는 편급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나) 홍삼본삼

| 크기별 특대편 | 구 분 | | 600g | 300g | 150g | 75g | 37.5g | 개체당중량(g) |
|------------|-----|-----|--------|-------|-------|-------|-------|----------|
| | 지 별 | 편급별 | 뿌리수 | 뿌리수 | 뿌리수 | 뿌리수 | 뿌리수 | |
| 대편 | 10 | 14 | 14 | 7 | - | - | - | 36 이상 |
| | 15 | 19 | 19 | 10 | - | - | - | 27~36 |
| | 20 | 28 | 28 | 14 | 7 | - | - | 19~27 |
| 중편 | 30 | 38 | 38 | 19 | 10 | 5 | - | 14~19 |
| | 40 | 48 | 48 | 24 | 12 | 6 | 3 | 12~14 |
| | 50 | 58 | 58 | 29 | 15 | 8 | - | 10~12 |
| 소편 | 60 | 68 | 68 | 34 | 17 | 9 | - | 8~10 |
| | 70 | 78 | 78 | 39 | 20 | 10 | - | 7~8 |
| | | 소지 | 70~100 | 40~50 | 21~25 | 11~13 | - | 6~7 |

※ 비고 : 포장검사는 표에서 정한 포장단위에 따른 지별 또는 편급별로 검사할 수 있다. 다만, 표에서 정한 포장단위 외의 포장단위에 대하여는 300g단위포장의 지별·편급별·뿌리수 및 개체중량을 기준으로 검사할 수 있다.

다) 태극분삼, 백삼분삼

| 구분 | 600g | | 300g | | 150g | | 75g | | 개체당중량(g) |
|-----|------|-------|------|------|------|-----|-------------|--|----------|
| | 편급별 | 뿌리수 | 뿌리수 | 뿌리수 | 뿌리수 | 뿌리수 | 뿌리수 | | |
| 특대편 | 5 | 10 | 5 | 3 | 4 | 4 | 47.1 이상 | | |
| | 8 | 16 | 8 | 4 | 5 | 5 | 35.1 ~ 47.0 | | |
| 대 편 | 10 | 20 | 10 | 5 | 5 | 5 | 25.1 ~ 35.0 | | |
| | 15 | 30 | 15 | 8 | 8 | 4 | 17.6 ~ 25.0 | | |
| | 20 | 40 | 20 | 10 | 10 | 5 | 13.6 ~ 17.5 | | |
| 중 편 | 25 | 50 | 25 | 13 | 13 | 6 | 11.1 ~ 13.5 | | |
| | 30 | 60 | 30 | 15 | 15 | 8 | 8.8 ~ 11.0 | | |
| | 40 | 80 | 40 | 20 | 20 | 10 | 6.8 ~ 8.7 | | |
| 소 편 | 50 | 100 | 50 | 25 | 25 | 13 | 5.6 ~ 6.7 | | |
| | 60 | 120 | 60 | 30 | 30 | 15 | 4.6 ~ 5.5 | | |
| | 75 | 150 | 75 | 38 | 38 | 19 | 3.6 ~ 4.5 | | |
| | 편급외 | 151이상 | 76이상 | 39이상 | 20이상 | | 3.6 미만 | | |

※ 비고 : 포장검사는 표에서 정한 포장단위에 따른 지별 또는 편급별로 검사할 수 있다. 다만, 표에서 정한 포장단위 외의 포장단위에 대하여는 300g단위포장의 지별·편급별·뿌리수 및 개체당 중량을 기준으로 검사할 수 있다.

라) 기타 형태의 삼의 지별·편급별 구분 및 별도의 포장단위는 필요한 경우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4) 표시검사

- 가) 품목·원료삼의 생산년도, 원산지, 연근, 등급, 중량, 편급(뿌리수), 크기, 제조자(수검자)의 주소, 상호, 성명, 지리적표시등록번호, 품질보증기간, 검사연월일 및 검사자를 기재하였는지의 여부
- 나) 인삼류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상호 등을 포장에 표기하였는지의 여부

- 다) 겉포장이나 속포장 등의 설명에 인삼의 유효성분·함량·용법 및 용량 등을 허위로 표시하였는지의 여부
- 라) 내용물의 용량이 포장에 표시된 중량 이상인지의 여부
- 마) 표시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할 수 있는지의 여부

5) 불합격 기준

- 홍삼·태극삼 및 백삼검사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재제조함으로써 상위등급 또는 해당규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원하는 때에는 검사등급 판정을 보류하고 1차에 한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제조를 하게 할 수 있다.
- 가) 품질검사, 포장검사 및 표시검사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것
 - 나) 변질되었거나 곰팡이가 발생한 것
 - 다) 유효물질이 포함되었거나 고유색상을 변색시킬 수 있는 물질 등의 유효물질로 처리한 것
 - 라) 인위적 조작을 하여 내용성분이 유실된 것
 - 마) 충해가 발생한 것

3. 인삼류의 검사방법

홍삼, 태극삼, 백삼은 전수 또는 추출한 표본에 대하여 관능검사방법 또는 검사기기에 의한 검사방법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방법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체검사업체 행정처분기준(제21조제3항 관련)

| 위 반 행 위 | 근거법령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
|---|----------------|--|-------------|------|
| | | 1회 | 2회 | 3회 |
| 1.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의 기준에 미달하는 인삼류를 합격품으로 검사한 경우 가. 법 제17조제3항 및 이 규칙 제18조의3을 위반하여 일반검사기준(수분은 제외한다)에 미달하는 인삼류를 합격품으로 검사한 경우 나. 법 제17조제3항 및 이 규칙 제18조의3을 위반하여 개별검사에 미달하는 인삼류를 합격품으로 검사한 경우 | 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 | 경고 | 검사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 다음의 1) 및 2)의 별첨부와 및 지정취소기준, 행정처분 기준 적용 | | |
| 2. 법 제17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쇄하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판매한 경우 |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 | 지정취소 | | |
| 3. 법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직접 제조하지 아니한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에 대하여 지체검사를 한 경우. 다만, 수출용으로서 자기상표를 붙여 지체검사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 | 지정취소 | | |
| 4.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 | 지정취소 | | |
| 5.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검사정지기간 중에 검사를 한 경우 | 법 제17조의3제1항제5호 | 지정취소 | | |

1) 별점부과 및 지정취소기준

| 항 목 별 | 별 점 | | | 자체검사업 체 지정취소 | |
|-------------------------------------|---------------------------------------|---------------------------------------|---------------------------------------|---------------------------------------|-----------------------------|
| | 1점 | 2점 | 3점 | | |
| ○연 근 착오율 | 1개 년 근 착 오 율 | 10% 이상 미 만 | 20% 이상 미 만 | 30% 이상 미 만 | 40% 이상 |
| | 2개 년 근 이 상 착 오 율 | 5% 이상 미 만 | 10% 이상 미 만 | 20% 이상 미 만 | |
| ○등 급 착오율 | 1개 등 급 착 오 율 | 10% 이상 미 만 | 20% 이상 미 만 | 30% 이상 미 만 | 40% 이상 |
| | 2개 등 급 이 상 착 오 율 | 5% 이상 미 만 | 10% 이상 미 만 | 15% 이상 미 만 | |
| ○편 급 착오율 | | 10% 이상 미 만 | 20% 이상 미 만 | 30% 이상 미 만 | 40% 이상 |
| ○수 분 착오율 및 중 량 비율 | | 1% 이상 미 만 | 2% 이상 미 만 | 3% 이상 미 만 | 4% 이상 |
| | | 2% 이상 미 만 | 3% 이상 미 만 | 4% 이상 미 만 | |
| ○중 량 착오율 | | 부 족 량 1% 이 상 미 만 | 부 족 량 2% 이 상 미 만 | 부 족 량 3% 이 상 미 만 | 부 족 량 5% 이 상 |

2) 행정처분의 기준

1)의 기준에 의한 별점을 아래의 행정처분 지수로의 환산방법에 따라 환산한 지수가 1년간(6개월 자체검사정지기간은 제외한다) 5점 미만인 경우는 시정을 명하고, 5점 이상인 경우는 6개월 자체검사정지를 명하며, 10점 이상인 경우에는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을 취소한다.

※ 행정처분 지수로의 환산방법 : 확인시료의 별점합계÷확인시료수

- ※ 1. 검사 결과 2개 항목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점을 적용한다.
- 2. 연근·등급 및 편급착오율은 확인한 단위포장내의 총개수 중 기준에 부적합한 개수의 백분율로 산출한다.
- 3. 수분착오율은 수분함량을 확인하여 기준치를 초과한 수분함량을 말한다.
- 4. 중량비율은 단위포장 중량에 대한 수분기준을 초과한 개수의 중량의 백분율로 산출한다.
- 5. 중량착오율은 단위포장 중량에 대한 부족중량의 백분율로 산출한다.
- 6. 제1호기목의 위반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다.

[별표 4의2] <개정 2008.1.14>

검사수수료(제22조 관련)

| 구 분 | 수 수 료 | 비 고 |
|--------|---------------------|--|
| 관능검사 | 해당 물품가격의 4/1,000 이하 | ○제27조에 따른 재검사의 경우 해당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수수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농약 잔류검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성분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분의 수에 관계없이 1성분으로 본다 |
| 이화학검사 | 5,000원 이하/시료 1점 | |
| 미생물검사 | 5,000원 이하/시료 1점 | |
| 농약잔류검사 | 6만원 이하/시료 1점 1성분 | |

[별표 5] <개정 2008.1.14>

재검사명령기준(제23조제2항 관련)

| 항 목 별 | | 착 오 율 |
|---------|------------|------------------|
| 1. 연근착오 | 1개년근 착오 | 20% 이상 |
| | 2개년근 이상 착오 | 10% 이상 |
| 2. 등급착오 | 1개등급 착오 | 20% 이상 |
| | 2개등급 이상 착오 | 10% 이상 |
| | 3. 편급착오 | 30% 이상 |
| 4. 수분착오 | | 2% 이상 착오가 20% 이상 |
| 5. 중량착오 | | 부족량 2% 이상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 | |
|---|-----|
| [별지 제1호서식] 인삼경작신고서 | 98 |
| [별지 제2호서식] 인삼경작신고필증 | 99 |
| [별지 제3호서식] 인삼경작변경신고서 | 100 |
| [별지 제4호서식] 인삼경작(변경, 승계)신고필증 | 101 |
| [별지 제5호서식] 인삼경작승계신고서 | 102 |
| [별지 제6호서식] 수삼연근확인신청서 | 103 |
| [별지 제7호서식] 수삼연근확인서 | 104 |
| [별지 제8호서식] 인삼류제조업등신고서 | 105 |
| [별지 제9호서식] 인삼류제조업신고필증 | 106 |
| [별지 제9호의2서식] 인삼제품류영업신고통보서 | 107 |
| [별지 제10호서식] 인삼류제조업(변경·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 108 |
| [별지 제11호서식] 인삼류제조업 휴업·재개업 신고필증 | 109 |
| [별지 제12호서식] 인삼류제조업등 승계신고서 | 110 |
| [별지 제12호의2서식] 인삼제품류제조승계신고통보서 | 111 |
| [별지 제13호서식] 인삼검사(국내용, 수출용, 수입용)신청서 | 112 |
| [별지 제13호의2서식] 검사관리대장 | 113 |
| [별지 제13호의3서식] 검사필증수불대장 | 116 |
| [별지 제13호의4서식] 원산지검사대장 | 117 |
| [별지 제13호의5서식] 농약잔류검사대장 | 118 |
| [별지 제13호의6서식] 미생물검사대장 | 119 |
| [별지 제14호서식] 인삼(종자·종묘)검사신청서 | 120 |
| [별지 제15호서식]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 신청서 | 121 |
| [별지 제15호의2서식] 압류증 | 122 |
| [별지 제16호서식] (인공종식)인삼류 검사증명서 | 123 |
| [별지 제17호서식] 자체검사업체 검사성적서 | 124 |
| [별지 제18호서식] | 125 |
| [별지 제19호서식] 인삼류조사직원증 | 126 |
| [별지 제20호서식] 인삼류조사공무원증 | 127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99.8.7, 2001.7.14>

인삼경작신고필증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수확예정연도 : 년근
수확예정연도 : 수확예정연근 : 년근
신고번호 : 총 식재면적 : a
신고일자 :

경작신고지의 파종 또는 식재 사항

| ①경작지 | ②지목 | ③파종 또는 식재면적 | ④식재일 |
|-------------------|-----|-------------|------|
| 도시·시·군·읍·면·리·동·번지 | | a | |

인삼산업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삼경작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관련 품목조합장 [인]

27271-36511일

210mm×297mm

99.6.12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999.8.7, 2001.7.14>

| | | | |
|--|----------------------------|---------|---------------|
| 인삼경작변경신고서 | | | 처리기간 2일 |
| 신고인 |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소 | (전화) | |
| ④경작지 | 도·시·시·군 읍·면·리·동 번지 (신고번호) | | |
| ⑤신고번호 | ⑥변경연월일 | | |
| 경작변경사항 | | | |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변경사유 |
| ⑦식재면적 | a | | |
| ⑧식재연도 | | | |
| ⑨경작지의 위치 | | | |
| <p>인삼산업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삼경작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p> | | | |
| 년 | 월 |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p>○○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관련 품목조합장 귀하</p> | | | |
| 구비서류 : 인삼경작신고필증 | | | 수수료 |
| | | | 없음 |

27271-19411번

210mm×297mm

99.6.12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 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개정 1999.8.7, 2001.7.14>

| 인삼경작(변경, 승계)신고필증 | | | |
|--|---------------------------|--------------|----------|
| 승계인 또는 변경신고인 |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전화) |
| | ③주소 | | |
| 피승계인 | ④성명 | 서명(인) | ⑤주민등록번호 |
| | ⑥주소 | (전화) | |
| ⑦경작신고번호 | | ⑧변경 또는 승계연월일 | |
| 변경 또는 승계사항 | | | |
| ⑨사유 <input type="checkbox"/> 변경 <input type="checkbox"/> 상속 <input type="checkbox"/> 양수 <input type="checkbox"/> 합병 | ⑩경작지 위치 시·군 읍·면 리·동 번지 | ⑪식재면적 a | ⑫수확예정연도 |
| | | | |
| | | | |
| 인삼산업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삼경작(변경, 승계)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 | | |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width: 100%;"> 년 월 일 </div> | | | |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관련 품목조합장 [인] | | | |

27271-36611일

210mm×297mm

99.6.12 승인

(신문용지 54g / m²(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개정 1999.8.7, 2001.7.14>

| | | | | |
|---|--------------------|-------------|-----------|---|
| 인삼경작승계 신고서 | | | | 처리기간 즉 시 |
| 승 계 인 (신 고 인)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 소 | (전화) | | |
| 피승계인 | ④성 명 | 서명(인) | ⑤주민등록번호 | |
| | ⑥주 소 | (전화) | | |
| 경 작 승 계 사 항 | | | | |
| | ⑦ 경 작 지 | ⑧ 지 목 | ⑨식재면적 | ⑩수확예정연도 |
| | 도·시·시·군 읍·면 리·동 번지 | | a | |
| ⑪경 작 신고번호 | | ⑫승 계 연월일 | ⑬승계 사유 | <input type="checkbox"/> 상속 <input type="checkbox"/> 양수 <input type="checkbox"/> 합병 |
| <p>인삼산업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삼경작승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p> | | | | |
| | 년 | 월 |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p>○○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관련 품목조합장 귀하</p> | | | | |
| 구비서류 : 피승계인의 인삼경작신고필증 | | | | 수수료 |
| | | | | 없 음 |

27271-19511번

210mm×297mm

99.6.12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 m²(재활용품))

수삼연근확인서

경 작 자 : 신 고 번 호 :

경 작 지 :

경 작 면 적 : a 수 획 면 적 : a

수 획 연 월 일 : 연 근 : 년 근

수 량 : kg(상자)

인삼산업법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삼연근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업 회 자 주 소 :

(경 작 지) 주민등록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 속 :

(검 사 원) 성 명 : (서명 또는 인)

27271-36811인

210mm×297mm

99.6.12 승인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9호의2서식] <신설 2001.7.14>

| | | |
|---|-------|---------|
| 인삼제품류영업신고통보서 | | 처리기간 |
| | | 2일 |
| 신 고 인 | | |
| ①대표자 성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③주소 | (전화) | |
| ④업체명 (상호) | | |
| ⑤제조장소재지 | | |
| ⑥제조품목 | | |
| <p>인삼산업법 제12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삼제품류의 제조·가공의 신고를 하였음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시장·군수·구청장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소관행정기관의 장 귀하</p> | | |
| <p>첨부서류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서류</p>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1999.8.7, 2001.7.14>

| 인삼류제조업등승계신고서 | | | | 처리기간 |
|---|---|-----------------|--------------|-----------|
| | | | | 즉 시 |
| 승계인 (신고인) | ①성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소 | (전화) | | |
| 피승계인 | ④성명 | 서명 (인) | ⑤주민등록번호 | |
| | ⑥주소 | (전화) | | |
| ⑦승계사유 | <input type="checkbox"/> 상속 <input type="checkbox"/> 양수 <input type="checkbox"/> 합병 | | ⑧신고번호 | |
| ⑨업체명 | | | | |
| ⑩제조장소재지 | | | | |
| ⑪승계연월일 | | ⑫제조종류 | | |
| 인삼산업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삼류제조업등승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년 월 일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구비서류 1. 피승계인의 인삼류제조업신고필증 2. 인삼제품류의 제조의 승계신고시에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주)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 | | 수수료 (주)참조 | |

27271-20311면

210mm×297mm

99.6.12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2001.7.14>

| 인삼제품류제조승계 신고통보서 | | | | 처리기간 즉 시 | |
|---|---|-------|---------|-------------|--|
| 승계인 (신고인) | ①성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 | ③주소 | (전화) | | | |
| 피계승인 | ④성명 | 서명(인) | ⑤주민등록번호 | | |
| | ⑥주소 | (전화) | | | |
| ⑦승계 사유 | <input type="checkbox"/> 상속 <input type="checkbox"/> 양수 <input type="checkbox"/> 합병 | | ⑧신고 번호 | | |
| ⑨업체명 | | | | | |
| ⑩제조장소재지 | | | | | |
| ⑪승계연월일 | | ⑫제조품목 | | | |
| <p>인삼산업법 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삼제품류의 제조의 승계신고를 하였음을 통보합니다.</p> | | | | | |
| <p>년 월 일</p> | | | | | |
| <p>○○시장·군수·구청장 [인]</p> | | | | | |
| <p>소관행정기관의 장 귀하</p> | | | | | |
| <p>첨부서류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규정된 서류</p> | | | | | |

210_{mm}×297_{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8.1.14>

| | | | | | |
|--|--|----------------------|-----------|---|--|
| 인삼류검사(국내용·수출용·수입용)신청서 | | | | 처리기간 관능 : 3일 동약·이화학· 미생물 : 10일 | |
| 신청인 (제조사 또는 수집자) | ①성명 | |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소 | | | (전화) | |
| ④제조장 또는 영업소 소재지 | | (전화) | | | |
| ⑤업체명 | | ⑥제조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⑦검사의 종류 | <input type="checkbox"/> 관능 (성분) <input type="checkbox"/> 농약 (항목) <input type="checkbox"/> 이화학(항목) <input type="checkbox"/> 미생물(항목) |
| ⑧인삼의 종류 | <input type="checkbox"/> 홍삼 (4.5.6년) <input type="checkbox"/> 태극삼(4.5.6년) <input type="checkbox"/> 백삼 (4.5.6년) | ⑨수량 | | ⑩제조 연월일 | |
| ⑪원산지 | | ⑫검사희망 연월일 | | ⑬검사 희망장소 | |
| 인삼산업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 | | | | |
|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귀하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구비서류 | | | | | |
| | | | | 수수료 | |
| | | | | (주) 참조 | |
| 1. 수삼연근확인서 1부(5년근 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 | | | | |
| 2.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사본 1부(수출의 경우에 한한다) | | | | | |
| 3. 수입면장 사본 1부(수입의 경우에 한한다) | | | | | |
| (주)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한 수수료 | | | | | |
| 27271-20511번 | | 210mm×297mm | | | |

99.6.12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 | | | |
|---------|------|------|--------|-----|-----|
| 삼 중 태극삼 | 생산년도 | 검사월일 | 제조로트번호 | 검사량 | 검사자 |
|---------|------|------|--------|-----|-----|

| 구분 | 연근 | 포장량 (g) | 등급 | 검사량 (개) | 수분 검사 (%) | 검사 증 번호 | 구 분 | | 포장 량 (g) | 등급 | 검사 량 (개) | 수분 검사 (%) | 검사 증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미삼류 | 대미 | | | | | | | | | | | | | | | | | | | |
| 직삼 | 4 | 1등(송) | 1등(송) | | | | | | | 1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등(죽) | 2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등(매) | 3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계 | | | | |
| | | | | | | | | | | | | | | 5 | 1등(송) | 1등(송) | 1등 | | | | | | 중미 | 1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등(매) | 3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6 | 1등(송) | 1등(송) | 1등 | | | | | | 세미 | 1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등(매) | 3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원형 | 4 | 1등(송) | 1등(송) | | | | | | 합계 | 합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등(매) | 합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합격 | | | | | | | | | | | | | | | | | | | | | | |
| 5 | 1등(송) | 1등(송) | 1등 | | | | | | 과쇄 | 합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등(매) | 합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합격 | | | | | | | | |
| | | | | | | | | | | | | | | 6 | 1등(송) | 1등(송) | 1등 | | | | | | 계 | 합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등(매) | 합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합격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합계 | 합계 | 합계 | | | | | | 합계 | 합격 | | | | | | | | | | | | | | | | | |

※ 당일 검사할 물량 중 제조 로트 번호가 많을 경우에는 구분란에 기재

| | | | | | | |
|---|---|------|------|---------|-----|-----|
| 삼 | 중 | 생산년도 | 검사월일 | 제조ロット번호 | 검사량 | 검사자 |
| 백 | 삼 | | | | | |

| 구분 | 연근 | 포장량 (g) | 등급 | 검사 수량 (개) | 수분 검사 (%) | 검사 중 번호 | 구분 | | 포장 량 (g) | 등급 | 검사 수량 (개) | 수분 검사 (%) | 검사 중 번호 | |
|-------|-------|------------|-------|-----------------|-----------------|---------------|-------|-------|----------------|----|-----------------|-----------------|---------------|-------|
| | | | | | | | 미선포 | 대미 | | | | | | |
| 원삼류 | 4 | 1등(송) | 합계 | | | ~ | 기타 | 절삼 | | 1등 | | | ~ | |
| | | | | | | | | | | | | | | 2등(죽) |
| | | 3등(매) | 합계 | | | 3등 | | | | | | | | |
| | | | | | | | | | 계 | | | | 계 | |
| | | 5 | 1등(송)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2등(죽) | 합계 | | | 1등 | |
| | 3등(매) | 합계 | | | 2등 | | | | | | | | | |
| | | | | | | | | 계 | | | | 3등 | | |
| | 6 | 1등(송)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2등(죽) | 합계 | | | | 2등 | |
| | | 3등(매) | 합계 | | | 3등 | | | | | | | | |
| | | | | | | | | 계 | | | | 계 | | |
| 4 | | 1등(송)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2등(죽) | 합계 | | | 1등 | | |
| 3등(매) | 합계 | | | 2등 | | | | | | | | | | |
| | | | | | | | 계 | | | | 3등 | | | |
| 5 | 1등(송)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2등(죽) | 합계 | | | 1등 | | | |
| 3등(매) | 합계 | | | 2등 | | | | | | | | | | |
| | | | | | | | 계 | | | | 3등 | | | |
| 6 | 1등(송)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2등(죽) | 합계 | | | 1등 | | | |
| 3등(매) | 합계 | | | 2등 | | | | | | | | | | |
| | | | | | | | 계 | | | | 3등 | | | |
| 합계 | | | | | | | | | | | | | | |

※ 당일 검사할 물량 중 제조 로트 번호가 많을 경우에는 구분란에 기재

[별지 제13호의4서식] <신청 2008.1.14>

원산지검사대장

| 번호 | 수출업자 (신청업체) | 수입자 | 품명 | 수량 | 선적 항구 | 검사 기관 | 검사 일자 | 발급 기관 |
|----|----------------|-----|----|----|----------|----------|----------|----------|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6 | | | | | | | | |
| 7 | | | | | | | | |
| 8 | | | | | | | | |
| 9 | | | | | | | | |
| 10 | | | | | | | | |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8.1.14>

| | | | | |
|---|----------------------------------|---|-----------|----------------------|
| 인삼 <input type="checkbox"/> 종자 <input type="checkbox"/> 종묘 | | 검사신청서 | | 처리기간 |
| | | | | 종자 : 10일 종묘 : 20일 |
| 신청인 | | | | |
| <input type="checkbox"/> ①성명 | <input type="checkbox"/> ②주민등록번호 | | | |
| <input type="checkbox"/> ③주소 | (전화) | | | |
| ④채종포(묘포) 소재지 | | | | |
| ⑤용도 | ⑥종자 및 종묘구분 | <input type="checkbox"/> 종자(대·중·소) (개감·미개감) <input type="checkbox"/> 종묘 | ⑦생산연도 | |
| ⑧수량 | ⑨검사희망 연월일 | ⑩검사희망 장소 | | |
| 「인삼산업법」 제1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삼종자·종묘검사를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의 장 귀하 | | | | |
| (주)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의 장이 정한 수수료 | | | 수수료 | (주)참조 |
| | | | | 210mm×297mm |
| | | | |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 | | | | | |
|---|-----|-------|-----|---------|-------------|------|
|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 신청서 | | | |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①성명 | | | ②주민등록번호 | (전화) | |
| | ③주소 | | | | | |
| ④제조업체명(상호) | | | | | | |
| ⑤제조장 소재지 (전화) | | | | | | |
| ⑥영업소 소재지 (전화) | | | | | | |
| 인삼 제조업 신고 | | | | | | |
| ⑦신고월일 | | ⑧신고번호 | | ⑨제조인삼종류 | | |
| 제조관리부서 책임자 | | ⑩주소 | | ⑪성명 | ⑫주민등록번호 | |
| 품질관리부서 책임자 | | ⑬주소 | | ⑭성명 | ⑮주민등록번호 | |
| ⑯자체검사업체로 지정 받고자하는 인삼종류 및 품목 | | | | | | |
| 인삼생산, 검사 및 판매내역 | | | | | | |
| ⑰연도 | ⑱삼종 | ⑲품목 | ⑳연근 | ㉑생산량 | ㉒검사량 | ㉓판매량 |
| 「인삼산업법」 제1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 |
| 국 립 농 산 물 검 사 기 관 장 귀하 | | | | | | |
| ※ 구비서류 | | | | | 수수료 | |
| 1. 인삼류제조업신고필증 사본 1부 | | | | | 없음 | |
| 2. 인삼류 품질관리 시설 및 인력내역 1부 | | | | | | |
| 3. 최근 2년 동안 인삼류를 자가제조하여 인삼류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실적 1부 | | | |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8.1.14>

(인공증식)인삼류검사증명서
(Certificate of artificially propagated Korea ginseng inspection)

| 신청인 (Applicant) | 성명 (Name) | | 주민등록번호 (I.D number) | | | | | | | |
|-------------------------|-----------------|-----------------------------|------------------------|---------------|--------------------------|--------------------|------------------|-----------------|-----------------------------|------------------------------------|
| | 주소 (Address) | | | | | | | | | |
| 제조사 (Manufacturer) | 성명 (Name) | 회사명 (Company) | | | | | | | | |
| | 주소 (Address) | | | | | | | | | |
| 삼종 (Kind of ginseng) | 품목 (type) | 연산 (Year of product-ion) | 연근 (Age of roots) | 등급 (Grade) | 지별및 (Number of roots) | 단위 (Net weight) | 수량 (Quantity) | 원산지 (Origin) | 검사유 효기간 (Expiry date) | 검사 월 일 (Date of inspec-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공증식)인삼류 검사증명서를 교부합니다.(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described (artificially propagated) ginseng have been inspected and pass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

(Date) 년 월 일

(Certificated by)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인]

27271-21011일 210mm×297mm
99.6.12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자체검사업체검사성적서

년 월 일

수신 :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

발신 : ○○회사 대표 (서명 또는 인)

1. 검사실적

| 삼종 | 연근 | 등급별 수량(kg) | | | | 합격 | 계 |
|----|----|------------|----|----|----|----|---|
| | | 1등 | 2등 | 3등 | 등외 | | |
| | | | | | | | |

※ 합격란은 기타 인삼류의 합격품중 1등·2등·3등 및 등외를 제외한 것

2. 이화학·미생물검사실적

| 검사 월일 | 삼종 | 농약잔류 | | | 인삼성분 | | 미생물시험 | | 기타 | 품질 관리 책임자 |
|----------|----|-----------|--------------|-------|--------|-----|-------|--|----|-----------------|
| | | 농약 성분명 | 잔류량 (ppm) | n-부탄올 | 목 은 | 세균수 | 대장균군 | | | |
| | | | | | | | | | | |

※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였을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명을 반드시 기재
 「인삼산업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검사
 성적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중전 별지 제18호서식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으로 이동 <2008.1.14>]

| | |
|--|-------------------------------|
| <p>제 호</p> <p>인삼류조사직원증</p> <p>소 속 :</p> <p>직 위 :</p> <p>직 명 :</p> <p>성 명 :</p> <p>주민등록번호 :</p> <p>위 사람은 「인삼산업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인삼류조사직원임을 증명합니다.</p> <p>년 월 일</p> <p>소속기관장</p> | <p>사 진</p> <p>(2.5cm×3cm)</p> |
|--|-------------------------------|

90mm×60mm(인쇄용지(특급) 120g/m²)

제 호

인삼류 조사 공무원

사 전
(2.5cm×3cm)

소 속 :

직 위 :

직 명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인삼산업법」 제15조제4항·제17조의4제3항·제19조제5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인삼류 조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90mm×60mm(인쇄용지(특급) 120g/m²)

(뒤 쪽)

1. 인삼류 조사공무원이 인삼류에 대한 조사·확인 또는 압류 등을 하는 때에는 항상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이를 내보여야 합니다.
2.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이 증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지 못합니다.
3. 이 증표의 기재사항 중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삼산업법

2008년 3월 인쇄

2008년 3월 발행

발행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 채소특작팀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 500 - 1869